

제 4 장

행정자료를 활용한 전국사업체 통계 작성 방법 연구

송호만 · 김태준 · 최기재

제1절 서 론

1. 연구 배경

우리나라의 전국사업체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소지역단위의 지역통계를 작성하여 지역 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지역소득추계의 기초자료 등 통계생산과 사업체조사의 모집단의 명부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1994년부터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시하다가, 2009년에 전국 및 시도별 사업체조사로 명칭 변경하여, 2010년에 제 17차 조사를 하였다(통계청, 2010).

전국사업체조사의 자료 입수방법으로는 조사원을 채용하여 직접 현장에 나가 전수조사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에 대하여 조사표 설계의 문제점¹⁾, 조사비용의 과다, 응답부담의 과다 등의 지적이 있었다(Wallgren and Wallgren, 2007).

더욱이 최근 다음과 같은 사업체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조사방법에 대한 개선 요구에 직면해 있다.

첫째, 현금영수증제도의 확대와 신용카드의 일반화에 따라 과세행정에서 자영업자의 파악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도입한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 통합징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사업자 포착률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²⁾

1) 조사표 설계의 오류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 ‘정보를 기억하지 못한다’, ‘부주의하게 답변한다’ 등의 문제점이 있다.

둘째, 행정자료의 제공에 관한 통계법 제24조,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제공의 예외 사유에 관한 통계법시행령 제38~39조 및 국세자료의 비밀유지 예외 사유로 통계목적은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등을 제·개정하여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법적 테두리가 마련되었다.

셋째, 사업체조사에 활용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명부, 사업자현황신고명부, 사업자등록번호명부, 국민연금사업장명부, 산업재해보험명부(이하 산재보험명부) 등의 자료가 통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입수하여 행정자료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넷째, 이러한 행정자료의 활용현황은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체조사 등에서의 응답불응, 부재가구에 대하여 조사 보완·대체 등 소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응답부담의 경감 및 조사비용 절감을 위해 인구주택총조사의 등록센서스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통계생산에 행정자료를 직접 활용하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2. 연구 목표 및 내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자료의 양적증가 및 품질향상, 행정자료의 활용에 대한 기반조성 및 사업체조사와 관련된 행정자료가 입수되었고, 행정자료의 소극적 사용에서 적극적 사용으로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사업체조사를 국세자료 및 사회보험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전국사업체통계가 생산가능한지를 보고자한다.

연구를 위하여 우선 사업체조사와 행정자료에 대하여 목적 및 자료의 형태를 살펴본 후, 사업체조사와 행정자료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고, 사업체통계작성 방법을 검토하고자한다. 다음으로 사업체통계의 구체적인 작성으로 행정자료의 기준 시점 통일 및 중복자료 처리, 행정자료의 통합 및 사업자의 사업체로의 통합 분할 및 통합 등의 통계처리 한 후 전국사업체통계를 생산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생산된 사업체통계의 포괄범위(Coverage ratio)³⁾와 일관성(coherence)⁴⁾을 비교하여 전국사업체통계의 생산 가능성

- 2) 부가가치세명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포괄율은 1993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42.8%에서 2009년에 89.7%로 무려 46.9%p가 상승하였다.

| | 경제활동인구조사 | 부가가치세명부 | 포괄율 ((부가가치세명부/경제활동인구조사)*100) |
|------|----------|---------|---------------------------------|
| 1993 | 5,258 | 2,253 | 42.8 |
| 1998 | 5,616 | 2,855 | 50.8 |
| 2003 | 6,043 | 3,995 | 66.1 |
| 2008 | 5,970 | 4,902 | 82.1 |
| 2009 | 5,711 | 5,124 | 89.7 |

- 3) 어떤 특정한 범주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정된 관찰치들이 범주와 연관된 관찰치를 포함하는 일차 단위별로 보증하는 범위의 척도(SDMX, 2009)
- 4) 일관성은 서로 다른 방법과 다양한 이용에 대해 결합될 수 있는 통계의 적절성으로 서로 다른 자료원천으로부터 그리고, 특별히 서로 다른 방법을 이용한 통계조사로부터 비롯되었을 때, 통계는 종종 완전하게 구



을 살펴 보고자한다.

제 2 절 행정자료를 활용한 전국사업체통계 작성 방법 검토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사업체조사의 작성을 위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한 전국사업체조사의 통계작성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다음으로 전국사업체조사를 살펴보고 사업체조사에 활용될 수 있는 행정자료를 검토하며, 행정자료와 통계자료의 차이를 고려한 사업체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1. 행정자료 기반한 통계 작성 방법론

행정자료를 관리하는 행정당국은 행정 목적에 맞게 자료를 제어하고, 수정하고, 기타 처리 과정을 수행한다. 통계기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당국이 국가 통계기관에 데이터를 보낼 때, 선별과 처리 과정이 추가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정등록부에서 나온 자료로부터 직접적으로 통계를 생산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Wallgren and Wallgren, 2007). 개별 단위의 정의와 변수가 에디팅 되어야 하는 등 행정등록부의 자료가 통계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UNECE, 2007). 이러한 등록부의 통계적 처리 과정(register-statistical processing)은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행정등록부(administrative register)를 통계등록부(statistical register)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계등록부안에 데이터들이 조직되는데, 개별 등록부의 데이터들은 연계키를 통해 서로 연계된다. 등록부의 통계적 처리 과정은 데이터의 편집, 변수의 코딩, 결측된(missing) 개별 단위와 변수의 처리, 연계와 선택, 기준 시점의 처리, 파생된(derived) 개별 단위의 생성, 파생된 변수의 생성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Wallgren and Wallgren, 2007, 조순기·최은영, 2009)

이것은 모든 등록부가 개별 등록부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시스템의 일부로

별되지 않고, 다른 접근, 분류와 방법론적 표준에 기인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일관성 진단은 정규적으로 수행된다: 잠정통계와 확정통계 간, 연간통계와 단기통계 간, 동일한 사회경제적 차원으로부터의 통계 간, 조사통계와 국민계정 간에 진단이 수행된다. 일관성의 개념은 통계적 영역들 간의 비교가능성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관성과 비교가능성 둘 다는 서로의 측면에서 하나의 데이터 세트를 나타낸다. 둘 간의 차이점은 비교가능성은 대개 연관되지 않은 통계모집단에 근거한 통계간의 비교를 나타내며, 일관성은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모집단에 대한 통계간의 비교를 나타낸다. 일관성은 일반적으로 '일관성-영역 간', 그리고 '일관성-내부적'으로 나뉠 수 있다. 이용자들은 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ound에서 '일치성'은 논리적이고 수치적인 '일관성'을 나타낼 때 이용한다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이 틀에서는 '내적일치성'과 '부문 간', '영역 간 일치성'은 각각 '내적일관성'과 '영역 간 일관성'과 대응된다(SDMX, 2009).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UNECE, 2007). 이러한 관점은 데이터의 수집, 데이터의 처리, 품질의 제어와 보급 등 통계 생산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통합된 시스템 하에서 모든 행정당국은 단일한 코드 체계를 사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기관의 등록부가 연계 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등록부에서 통계등록부로의 전환 과정에서는 행정등록부에 대한 품질 점검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공급자와의 접촉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입수된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점검, 결측값의 이유와 범위 파악, 잘못된 연계의 이유와 범위 분석, 객체와 변수의 질 분석, 등록부의 관리에 관한 연구, 불일치의 관찰과 보고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표 4-1> 참조).

<표 4-1> 행정등록부의 통계등록부로의 전환

| 행정자료 | | |
|--------|---|--|
| 통계처리과정 | <등록부통계처리과정> | <품질점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내검 · 변수 코딩 · 결측 대상과 결측치 처리 · 매칭 및 선별 · 조사대상기간 처리 · 파생대상 생성 · 파생변수 생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제공자와 연락 · 입수자료 점검 · 결측치: 이유와 그 규모 · 비매칭의 이유와 그 규모 · 대상 및 변수의 품질 평가 · 등록부 유지보수 · 불일치원인 파악 |
| 통계자료 | | |

자료: Wallgren and Wallgren, 2007.

2.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둘째,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셋째, 소지역단위의 지역통계를 작성하여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 자료로 활용 넷째, 지역소득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체 및 기업체단위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⁵⁾ 현재 국내에서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로 산업 활동을 수행한 (또는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

5)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기준일 존재한 사업장에 새로이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포함

체이다⁶⁾. 다만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사업체, 고정시설이 없는 노점, 행상, 포장마차, 이동차량 판매업자 등, 이동성이 강하고 영업시기가 불규칙적인 현장사무소는 제외하고 있다. 또한 조사의 응답지역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다(2010, 2009년 기준 사업체 조사 조사지침서).

3. 행정자료

행정자료는 중앙 및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각 기관의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자료이다. 사업자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 정책집행 및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료는 국세자료와 사회보험 자료가 있다. 국세자료는 조세부과 및 과세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이고, 사회보험자료는 국민생활 여건의 악화요인을 예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하는 행정자료에 대하여 행정자료와 국세자료 및 사회보험자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표 4-2>과 같다. 국세자료에는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있고,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 등이 있다.

<표 4-2> 행정자료 체계도

| 행정자료 | | | | | | |
|-----------|-------------|---------------|------|------|------|------|
| 국세자료 | | | 사회보험 | | | |
| 부가 가치세 | 사업장 현황신고 | 사 업 자 등록번호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 |

가. 부가가치세⁷⁾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조세 부과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자료는 사업자 관리를 목적으로 사업장마다 등록하는 사업자등록번호명부가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명부 중 과세사업자를 면세여부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등록되어 있는

6) 사업체의 판단에 영리·비영리, 적법·위법 여부는 관계없음
 7)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세자료는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와 과세행정의 산물인 부가가치세를 구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명부를 정의한다. 또한 행정자료와 행정자료 기반 통계에 활용 되는 자료를 구분하기 위해 행정자료에 명부를 부가하여 사용하고자한다 즉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장현황신고명부, 국민연금사업장은 국민연금사업장명부 등이다.

부가가치세명부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과세면제사업자의 부가가치 활동에 대하여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현황신고명부가 있다(<표 4-3>).

〈표 4-3〉 사업자의 과세자료의 종류

| 종류 | 사업자여부 | 면세여부 | 납세의무자 | 납세의 종류 |
|---------|-------|------|----------|------------------------|
| 부가가치세 | 사업자 | 과세 | 사업자, 수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 사업장현황신고 | | 면세 | 납세의무 없음 | 면세사업자 |
| 없음 | 비사업자 | | 납세의무 없음 | 과세제외사업소득자, 비과세사업소득자 |

1) 사업자등록번호명부

사업자등록대상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이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대상이고, 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행정의 편의와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과세관청에서 사업가능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으며 그 등록을 거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이준규, 2007)

면세사업자와 관련된 자료는 부가가치세명부 또는 사업장현황신고명부 등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에 활용하는 데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우선 과세제외사업(소득세법⁸⁾ 19조 1호, 소득세법 시행령⁹⁾ 제 33·35·36조)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면세사업으로 농업 중 작물재배업. 이는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하되, 판매장·직매장 등을 특설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도소매업 또는 제조업 소득으로 본다.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 단,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는 연구 및 용역제공 사업은 제외한다. 기능대학, 상설직업훈련시설, 노인학교 등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등이 있다(부가가치세법¹⁰⁾ 제 12조, 부령 28~46조¹¹⁾).

비과세 사업 첫째, 읍면지역에서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한 연 1,200만 원 이하 소득 둘째, 축산 양어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 제조 및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연 1,200만 원 이하 농가 부업소득 등 이다(소법 12조).

8) 이하 소법이라 한다.

9) 이하 소령이라 한다.

10) 이하 부법이라 한다.

11) 이하 부령이라 한다.

그러므로 면세사업과 비과세 사업은 부가가치세 부과관련 자료 외 행정목적은 달리 하는 타 사회보험 등의 기타 행정자료로 보완하여야한다.

2) 부가치세등록부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할 목적으로 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화의 공급·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 과세 대상이다. 재화에는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포함하며, 용역에는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부법 제 1조 1항, 2항).

과세기준일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제 1기는 1월 1일 ~ 6월 30일, 제 2기는 7월 1일 ~ 12월 31일이고,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고, 폐업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이다(부법 제 3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부법 2조 1항).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사업장에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가지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대법 89누 6952, 1990. 4. 24),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한다.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는 사업장별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부령 4조 1항). 다만 구체적인 정의는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업, 제조업, 건설/운수/부동산매매업,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다단계 판매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4-4> 사업별 사업장의 정의

| 업종구분 | 사업장 |
|----------------------|--|
| 광업 | 광업소재지, 단 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의 등록된 광구소재지 |
|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 건설/운수/부동산매매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등 | 업무 총괄장소 |
| 다단계판매업 | 다단계판매원이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소재지 |
| 무인자동판매기사업 | 업무총괄장소 |
| 통신판매업 |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소재지 |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승인을 얻어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¹²⁾에 할 수 있다(이하 주사업장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한 경우 사업자 단위로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부법 제 4조, 5조 2~3항).

3) 사업장현황신고명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이다(국세청, 2011).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 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국세청, 2011).

나. 사회보험명부¹³⁾

1) 국민연금사업자명부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3호).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은 1인 이상의 근로자¹⁴⁾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여기에서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로서, 민법, 상법상의 개인이나 법인, 특별법상의 법인체 여부, 영리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물론,

12)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지점 중 선택가능하나 개인은 주사무소로 한다.

13)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험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는 그 의미와 내용이 상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사회보험의 등록자료에 대하여 국민연금명부, 고용보험명부, 산업재해보험명부 등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14) 그러므로 법인사업장에서 대표이사 1인만 있어도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가입대상인 사업자이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회사,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때, 가입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이다(국민연금관리공단, 2011).

또한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된다. 다만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 일용직만을 대상으로 한다¹⁵⁾(국민연금관리공단, 2011).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있는 경우 한 곳에서 일괄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개의 사무소를 가진 사업장이나 규모가 큰 사업장이 국민연금업무를 신속·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이 희망하는 경우에 분리적용을 인정하고 있다¹⁶⁾. 분리적용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1) 특정기업과 일반적인 거래 이상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고 그 지배하에 있는 계열사업장 또는 협력업체 2) 하나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었으나 법인격이 서로 다른 사업장 등이 있다(국민연금관리공단, 2011).

2) 고용보험 및 산재재해보험사업자명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 가입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산업재해보험의 경우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날 이후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개인별로 신고하지 않아 개인특성별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

둘째, 고용보험은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된다¹⁷⁾. 반

15) 단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20일 이상 일을 하여야한다.

16) 반면 사업체조사나 국제자료의 경우는 사업장별 조사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

면, 건설현장 사업장은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 일용직은 건설현장단위로 가입한다¹⁸⁾.

4. 행정자료에 기반을 둔 전국사업체통계 작성

가. 사업체조사와 행정자료의 비교

사업체조사의 행정자료로의 대체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재 사업체조사의 기능이 무엇인지와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생성된 행정자료의 사업체조사를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한다.

1) 전국사업체조사의 기능

사업체조사의 주요 기능은 전국사업체 조사의 본래 목적을 우선적으로 염두 해 두어야 한다. 사업체조사의 목적은 첫째,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를 목적으로 하며, 둘째,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셋째, 소지역 단위의 지역통계를 작성하여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자한다. 넷째, 지역소득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사업체 및 기업체단위 통계조사의 모 집단 명부로 활용된다(2010, 사업체조사 지침서)

이상의 전국사업체 조사의 기능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 소지역단위의 지역통계를 작성 등 지역단위로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둘째, 도·소매업동계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의 모집단으로써의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0.6.4>

- ③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 해지의 효력은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발생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18) 단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20일 이상 일을 하여야한다.



2) 행정자료와 사업체조사 비교

전국사업체조사와 행정자료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전국사업체 조사는 사업체조사와 관련된 모집단 제공 등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한 반면, 행정자료는 정부정책의 집행을 위한 자료로 정책의 성격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한다. 즉 국세자료는 국세 부과의 관리를 위한 자료로 국세 부과의 편의에 따라 작성되며, 사업체 관련 사회보험자료는 근로자 사업자의 노후 보장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는 등 근로복지를 위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전국사업체조사와 행정자료는 대상, 기준일, 등록 또는 가입지역, 각종분류 등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된다. 첫째, 가입(또는 등록)대상은 사업체조사의 경우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특성상 고정시설이 없는 노점, 행사, 포장마차, 이동차량 판매업자 등을 제외하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장려하여야 할 학교, 사회복지사업, 연구개발업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회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목표로 하다 보니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그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둘째, 가입(또는 조사, 등록)대상 기준일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년 발생한 부가가치 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의 활동에 대하여 부과 할 목적으로 하는 반면, 사회보험의 경우 일정한 시점에 근로복지 대상이 파악되고 있다. 셋째, 조사(또는 등록, 가입)대상 지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각 자료는 사업장 마다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으나, 국세자료의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광범위하게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의 경우도 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분리적용을 하여 사업장 외에서 가입 지역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 대비 등의 목적으로 사업장외의 산업현장 단위의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분류의 경우 특히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체조사는 매출액 우선 기준을 일괄되게 적용하고 있으나, 국세자료의 경우 면세와 사업이 있는 경우 비록 비면세 사업이 매출액이 크다 하더라도 산업분류를 과세사업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표 4-5>).

〈표 4-5〉 사업체조사와 행정자료의 비교

| | 사업체조사 | 행정자료 | |
|-----------|------------------------------------|--|------------|
| | | 부가가치세 | 사회보험 |
| 목적 | 사업체조사의 모집단 | 과세 | 근로복지 |
| 대상 | 종업원 없어도 됨 | 종업원 없어도 됨 | 종업원 있어야 함 |
| - 예외 | 고정시설이 없는 노점, 행상, 포장마차, 이동차량 판매업자 등 | 학교, 사회복지사업, 연구개발업 | |
| 기준일 | 12월 31일 |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 | 시점 |
| 조사 및 등록단위 | 사업장 | 사업장 | 기업체 단위 |
| - 예외 | 없음 |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분리적용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종사자 | 사업자 | 사업자(예외 있음) |
| 산업분류 | 매출액 | 매출액 | |
| 비과세사업 | 매출액기준 | 일반적으로 과세사업 위주로 분류 | |



나. 행정자료기반 전국사업체통계 작성 방법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행정자료의 특성은 행정 또는 정책목적에 따라 대상 산업의 범위가 다르고, 자료 작성을 위한 기준이 다르며, 자료 내에 포함된 매출, 종사자 등의 규모가 다르다.

그러므로 행정자료를 사업체조사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부가가치세 명부 외 사업장 현황신고 및 사회보험자료를 통합하여 보아야 포괄범위를 높일 수 있으며, 또한 기준일, 지역, 개념 등을 전환하여 통계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준 시점 통계처리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년 발생한 부가가치 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의 활동에 대하여 부과 할 목적으로 하는 반면, 전국사업체 조사의 경우 매년 12월 31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업체를 파악하고자 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 자료에는 현재 활동하지 않은 사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를 사업체통계에 활용하려면, 우선 12월 31일에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를 제거하여 기준

사업체조사와 기준 시점을 통일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자료의 경우 조사대상에 대하여 분기별 또는 월별로 자료가 축적되는 등 행정목적에 따라 자료가 중복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복자료를 제거하여야 한다.

2) 자료통합

부가가치세 과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명부는 일반과세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각각 그 포괄하는 범위가 다르다. 또한 사회보험의 경우도 사업장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산업재해보험은 근무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보호하고자하므로 사업장을 포괄하는 정도가 다르다(<표 4-6>).

그러므로 전국사업체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부가가치세 명부 외에 사업장현황신고,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등 가능한 넓게 사용하여 각 자료를 통합하여야 한다.

<표 4-6> 각 자료별 포괄범위 분포

| | | | |
|----|----------------|----------------|----|
| 대상 |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 | |
| 자료 |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신고 |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신고 | |
| | | | |
| | | 사회보험 | 자료 |
| | |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 대상 |

3) 행정자료의 등록단위인 사업자를 통계단위인 사업체단위로의 전환

통계단위란 생산단위의 활동(생산, 재무활동 등)에 관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할 대상이 되는 관찰 또는 분석단위를 말한다. 관찰단위는 산업 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동질성, 의사결정의 자율성, 자료수집 가능성이 있는 생산단위가 설정되어야 한다(한국표준산업분류, 2008).

사업체 단위는 공장, 광산, 상점, 사무소 등으로 산업 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양면에서 가장 동질성이 있는 통계단위이다. 이 사업체 단위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산업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영업인여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고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고 있는 단위이므로 장소의 동질성과 산업 활동의 동질성이 요구되는 생산통계 작성에 가장 적합한 통계단위라고 할 수 있다(한국표준산업분류,



2008).

국세자료는 등록단위로 사업장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사업장이란?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부법 제 4조). 이는 사업체단위와 일치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는 장소로 장소의 동질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또한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으로 의사결정의 자율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어, 통계단위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주사업장총괄납부에 따른 주사업장단위 등록 및 과세의 편의를 위한 도입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 등에 따라 통계단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록자료가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사업주이고 사업장이 장소를 달리한다하더라도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일괄적용을 원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8조 1항)으로 하고 있어 등록단위가 사업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험요율이 달라 상당히 사업장의 산업분류에 따라 등록되어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그 결과 고용보험에 비하여 사업장개념에 상당히 충실한 편이다.

〈표 4-7〉 사업체 자료의 통계단위 분류

| 종류 | 사업체조사 | 부가가치세 | 사회보험 | |
|-----------|-------|---------------------------|--------------------|---------------------|
| | | | 국민연금사업장등록부 | 산업재해보험등록부 |
| 작성단위 | 사업체 | 사업장 | 사업자 | 사업자 |
| 장소의 동질성 | ○ |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등 있음) | ×(원칙적으로 사업자 단위 등록) | △(사업장의 산업분류에 따라 등록) |
| 의사결정의 자율성 | ○ |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등 있음) | ×(원칙적으로 사업자단위 등록) | (사업장의 산업분류에 따라 등록) |
| 자료수집가능성 | ○ | ○ | ○ | ○ |

○ : 일치, △예외 있음, × : 불일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자료의 등록자료는 조사통계와 달리 사업장별로 과세 관리를 하거나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가 있고, 사업장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회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점 및 주사업장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一行多社). 이와는 반대로 단위의 동질성 및 업무수행의 완전한 독립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자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多行一社).

〈표 4-8〉 행정자료와 사업체조사의 사업자의 차이

| 유형 | 회사 | 본지점 | 사업체조사 | 행정자료 | 예 |
|------|--------------|-----|-------|------|---|
| 一行多社 | 제일제과 | 본점 | 0 | 0 |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사회보험사업장 |
| | | A지점 | 0 | × | |
| | | B지점 | 0 | × | |
| | | C지점 | 0 | × | |
| 多行一社 | 우리개인택시 조합 | 조합 | 0 | 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입차주,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및 공동사업자 |
| | | A씨 | × | 0 | |
| | | B씨 | × | 0 | |
| | | C씨 | × | 0 | |

즉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 조사단위로 사업체를 사용함에 따라 전국사업체 주요 기능인 지역단위로 자료 생산과 도·소매업동계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의 모집단으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한다. 반면 국세청자료와 사회보험자료의 경우 사업자단위를 근간으로 하여 지역단위와 조사의 모집단으로 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행정자료를 전국사업체조사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단위를 사업체 단위로 전환하여야 한다¹⁹⁾.

<一行多社 사업자>

사업체조사와 행정자료가 원칙적으로 사업장단위로 조사하고,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자료의 경우 사업장단위 외에 본점 또는 지점 등에서 국세납부 또는 사회보험가입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2 이상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 별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 사업장에서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그 납부 시기가 환급시기보다 빨라 이에 따른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 준다는 의미에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이다(부법 4조, 부령 5조).

19) 그러므로 행정자료가 사업장 개념을 사용하기도하나 전국사업체와 사업장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사업자와 사업체의 차이에서 발생하므로 행정자료의 사업자를 사업체로 통계처리하기 전까지는 사업자라고 하고 사업자를 통계 처리한 이후를 사업체라고 한다.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가치세의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의 예외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도 주된 사업장 1곳에서 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유사한 제도이다. 그러나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게 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하므로 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모든 지점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법 4조 3항 5조 2~3항).

이러한 사업장마다 납부를 하지 않고 본점 등 일정한 장소에서 납부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관세단위제도는 아래의 <표 4-9>의 예와 같이 대전 등 대도시의 본점위주로 작성되어 사업체조사의 본래 목적인 지역단위 통계 생산에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표 4-9> 예) 00식품(주)의 부가가치세 명부와 사업체조사의 사업

| 지역 | 부가가치세명부 | 전국사업체 |
|----|---------|-----------|
| 대전 | 00식품 본점 | 00식품 본점 |
| 논산 | 없음 | 00식품 논산지점 |
| 천안 | 없음 | 00식품 천안지점 |
| 금산 | 없음 | 00식품 금산지점 |
| 공주 | 없음 | 00식품 공주지점 |
| 부여 | 없음 | 00식품 부여지점 |

<多行一社 사업자>

행정자료에는 다수의 사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나 전국사업체조사에 한 개로 조사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공동사업자가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는 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1)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2)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3) 근로제공 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자를 말한다(사업체조사, 2010).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5조에 따르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통계조사와 과세부와 사회보험 대상 등 사회정책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조사의 경우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고, 비독립적 형태로 업무 수행한다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으나²⁰⁾, 행정자료의 경우 사회보험에 일부 예외²¹⁾가 있지만 일관되게 개인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동사업자는 개인사업자등록을 개별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공동사무실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의 특징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비하여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재료조달, 생산활동, 판매망 등을 독자결정)로 업무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 예로는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 택시조합의 개인택시기사 등이 있다.

그러므로 행정자료를 사업체조사에 활용하고자 할 때, 통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로 분류된 특수형태근로자 및 공동사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 4-10> 종사장지위 구분

| 독립성 여부 작업장 등 보유 여부 | 독립적 형태로 업무 수행 | 비독립적 형태로 업무 수행 | |
|--------------------------|--|--|-------------------------------------|
| |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재료조달, 생산활동, 판매망 등을 독자결정)로 업무 수행 | A. 근로(노무)제공의 방법, 근로(노무)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만, 주로 특정된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에서 타인을 사용 하지 않고 근로를 직접 제공 | B. 근로(노무)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까지 비독자적으로 결정 |
|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 보유 하지 않음 | 자유업자(음악평론가, 화가, 저술가, 번역사, 컨설턴트, 조산원, 도안사 등), 과외교사 등이 해당되며 자영업주로 분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자, 지입화물차 자동차대리점의 딜러 등) | 일반 임금근로자 |
|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 보유함 | 공동사업자(2인 이상의 공동출자, 공동사무실 또는 공동작업장 포함, 개인택시운전자 등) | - | -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지침서, 2009)

20) 단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자기자본을 투자한 지입화물에 대하여는 자업자로 분류함
 21) 보험설계사 및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 교사,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등에 한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3절 행정자료의 기준 시점 및 중복자료 통계처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국사업체통계에 활용될 행정자료는 국세청자료인 부가가치세 명부, 사업장현황신고명부 및 사업자등록명부와 사회보험자료인 사업장관련 국민연금 명부, 산재보험 명부 등이 있다. 그러나 각 자료는 그 목적에 따라 명부의 대상기간이 다르므로 통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 시점에 따라 통일하여야 한다. 또한 중복자료를 처리하여 사업체별로 자료를 전환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조사의 대체가능성을 보려는 목적에 따라 사업체조사의 기능인 사업체조사의 모집단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중복자료를 처리한 후 매년 말 시점으로 각 명부를 통일하고자 한다.

1. 국세명부

가. 부가가치세 명부

1) 기준시점 및 중복자료 제거

2009년 기준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부가가치세 명부에는 12,061,678 사업자가 존재하나 이는 분기별 중복이 존재하여 사업체 단위 통계를 위하여 중복 부분 6,544,856 사업자를 제거하면 5,516,822 사업자가 된다. 여기에는 12월 말에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활동하지 않는 다수의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폐업 업체를 파악하기 위해 과세기간에 12월 31일 포함하지 않은 업체를 분석한 결과 694,506개의 사업자로 파악되어 입수한 사업자 5,516,822 중 2009년 12월 31일에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는 4,822,316임을 알 수 있었다.

〈표 4-11〉 중복 및 기준시점 통계처리

(단위 ; 사업자)

| 통계처리 | 사업자 | 통계처리 대상 | |
|-----------|------------|-----------|-------------------|
| 원자료 | 12,061,678 | | |
| 중복 제거 후 | 5,516,822 | 6,544,856 | 중복자료 |
| 기준시점 처리 후 | 4,822,316 | 694,506 | 12월 31이전 폐업 또는 휴업 |

2) 휴업업체의 파악

12월 31일 포함하지 않은 업체를 분석한 결과 694,506 사업자 중 휴업여부를 알기 위해 2010년에 『부가가치세명부』를 확인해 본 결과 90.9%인 630,997 사업자가 부가가치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63,509 사업자만이 2010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4-12> 참조).

3) 사회보험명부에서의 휴업업체의 파악가능성

아래의 <표 4-12>에서와 같이 2009년 말에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활동하지 않았으나 2010년에 활동한 63,509 사업자에 대하여 2009년 말 기준으로 사회보험에서 활동한 사업자인지 파악해본 결과 30,763 사업자는 사회보험에 등록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행정자료에서 누락된 사업자는 32,746개로 2009년 말에 부가가치활동을 하지 않은 사업자 694,506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로 나타났다²²⁾.

<표 4-12> 사회보험명부에서의 휴업업체의 파악가능성

(단위 : 사업자, %)

| 구분 | 사업자 | |
|-------------------|---------|------------|
| | 인원 | 구성비 |
| 12월 말 기준 없음 | 694,506 | 100.0 |
| (10년) 부가가치세 명부 없음 | 630,997 | 90.9 |
| (10년) 부가가치세 명부 있음 | 63,509 | 9.1 |
| | 사회보험있음 | 30,763 3.9 |
| | 사회보험 없음 | 32,746 5.2 |

4) 휴업업체의 사회보험과 조직형태 교차분석

2009년 12월 말에 부가가치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자 존속이 확인된 63,509 사업자를 조직형태별로 보면, 개인이 44.7%인 28,367 사업자이고, 법인이 55.3%인 35,142 사업자로 법인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조직형태를 교차하여 보면 전체의 사회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46.3%로 높았으며 특히 법인 중 본사/본부/본점 43.7%인 27,773 사업자이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42.5%인 27,023 사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1%인 1,344 사업자만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였다.

22) 동일인이 폐업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전년도에 사용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할 수 있어 32,746 사업자 중 실제 일부는 2009년에 폐업한 사업자로 보인다.

〈표 4-13〉 (2009년 말) 휴업사업자의 사회보험과 조직형태별 분석

(단위 : 사업자, %)

| 구분 | 계 | 사회보험 | | | | |
|--------------|--------|-------|--------|------|--------|------|
| | | 구성비 | 있음 | 없음 | | |
| | |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
| 계 | 63,509 | 100.0 | 30,763 | 48.4 | 32,746 | 51.6 |
| 개인사업자 | 28,367 | 44.7 | 1,344 | 2.1 | 27,023 | 42.5 |
| 법인 | 35,142 | 55.3 | 29,419 | 46.3 | 5,723 | 9.0 |
| 단독사업자 | 553 | 0.9 | 451 | 0.7 | 102 | 0.2 |
| 공장/지사(점)/영업소 | 1,401 | 2.2 | 467 | 0.7 | 934 | 1.5 |
| 본사/본부/본점 | 32,166 | 50.6 | 27,773 | 43.7 | 4,393 | 6.9 |
| 비영리법인본점 및 지점 | 923 | 1.5 | 636 | 1.0 | 287 | 0.5 |
| 국가, 지방자치단체 | 99 | 0.2 | 92 | 0.1 | 7 | 0.0 |

5) 휴업업체의 사회보험과 산업분류의 교차분석

산업분류별로 보면, 가장 높은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이 25.5%인 16,173 사업자인데, 다음으로 16.3%인 10,353 사업자인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11.9%인 7,532 사업자인 ‘제조업’이었다(〈표 4-14〉).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산업분류를 교차하여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은 사회보험가입한 경우가 12.9%, 하지 않은 경우가 12.5%로 비슷하였으나,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가입한 경우가 2.0%이고, 하지 않은 경우는 14.3%이었으나 ‘제조업’은 가입한 경우가 9.2%로 가입하지 않은 2.6%보다 6.6%p가 높았다(〈표 4-14〉).

〈표 4-14〉 (2009년 말) 휴업사업자의 사회보험과 산업분류와 교차분석

(단위 : 사업자, %)

| 산업분류 | 계 | | 사회보험 | | | |
|-------------------------------|--------|-------|--------|------|--------|------|
| | | | 있음 | | 없음 | |
|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 | 63,509 | 100.0 | 30,763 | 48.4 | 32,746 | 51.6 |
| 미입력및오류 | 4,266 | 6.7 | 2,060 | 3.2 | 2,206 | 3.5 |
| 농업, 임업및어업 | 99 | 0.2 | 39 | 0.1 | 60 | 0.1 |
| 광업 | 40 | 0.1 | 19 | 0.0 | 21 | 0.0 |
| 제조업 | 7,532 | 11.9 | 5,864 | 9.2 | 1,668 | 2.6 |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 47 | 0.1 | 11 | 0.0 | 36 | 0.1 |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 117 | 0.2 | 95 | 0.1 | 22 | 0.0 |
| 건설업 | 4,513 | 7.1 | 2,964 | 4.7 | 1,549 | 2.4 |
| 도매및소매업 | 16,173 | 25.5 | 8,221 | 12.9 | 7,952 | 12.5 |
| 운수업 | 2,460 | 3.9 | 886 | 1.4 | 1,574 | 2.5 |
| 숙박및음식점업 | 4,347 | 6.8 | 492 | 0.8 | 3,855 | 6.1 |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3,353 | 5.3 | 2,810 | 4.4 | 543 | 0.9 |
| 금융및보험업 | 492 | 0.8 | 312 | 0.5 | 180 | 0.3 |
| 부동산업및임대업 | 10,353 | 16.3 | 1,288 | 2.0 | 9,065 | 14.3 |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4,395 | 6.9 | 3,467 | 5.5 | 928 | 1.5 |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 1,674 | 2.6 | 1,181 | 1.9 | 493 | 0.8 |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 35 | 0.1 | 30 | 0.0 | 5 | 0.0 |
| 교육서비스업 | 482 | 0.8 | 292 | 0.5 | 190 | 0.3 |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64 | 0.1 | 39 | 0.1 | 25 | 0.0 |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850 | 1.3 | 161 | 0.3 | 689 | 1.1 |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 2,214 | 3.5 | 532 | 0.8 | 1,682 | 2.6 |
| 가구내 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 3 | 0.0 | | - | 3 | 0.0 |

나. 사업장현황신고명부²³⁾

사업장현황신고 576,628 사업자 중 중복이 발생한 17,433 사업자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²⁴⁾를 제외하면 559,195 사업자가 되었다. 이 자료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료의 중복을 정리하면 494,398 사업자로 나타났다(<표 4-15> 참조).

<표 4-15> (2009년 말 기준)사업장현황신고 통계처리

(단위 : 사업자)

| 통계처리 | 사업자 | 처리대상 | 종류 |
|----------|---------|--------|-------------------|
| 입수자료 | 576,628 | | |
| 중복제거 | 559,195 | 17,433 | 중복자료 |
| 기준 시점 처리 | 494,398 | 64,797 | 2009년 12월 31일전 자료 |

다. 사업자등록번호명부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의 상황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번호에 의하여 통제함으로써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하는 등 과세행정의 편의와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부법 5, 부령 7조),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국세행정의 협력의무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이 사업가능 여부를 심사 할 수 없으므로 그 등록을 거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2007, 이준규). 즉 사업자등록 및 그 내용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 내용과는 무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사업자등록명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사업자등록자의 실제 사업 활동 여부 및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살펴보면, 2009년 말에 등록된 사업자는 5,707,627이나 국세자료 또는 사회보험 등의 가입 자료 등에서 확인한 결과 313,094 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근거가 없는 비활동사업자로 보이고, 반면 부가가치 활동과 사회보험 가입 등의 활동이 있어 사업자로 분류하나 누락된 사업자가 167,670개 되었다.

23) 통합행정자료 작성 시 사용된 자료는 중복 제거 자료만 사용하였다.

24)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7,126명은 사업장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 1,203명, 학습지교사 등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한 인적용역자 4,426명 등이 있음. 업종코드가 없는 경우도 33명이었다.



〈표 4-16〉 사업활동여부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명부의 사업자 분류

(단위 : 사업자, %)

| 누락여부 | 자료원 | 사업자 | 구성비 |
|----------|---------|-----------|-----------|
| | | | |
| 누락사업자포함 | | 5,875,297 | 100.0 |
| 사업자등록자료 | | 5,707,627 | 97.1 |
| | 비활동 사업자 | 313,094 | 5.3 |
| | 연계 | 국세 | 4,209,004 |
| | | 사회보험 | 139,338 |
| | | 중복 | 1,046,191 |
| 활동사업자 누락 | | 167,670 | 2.9 |
| | | 국세 | 116,591 |
| | | 사회보험 | 41,878 |
| | | 중복 | 9,201 |

비활동 사업자 313,094개를 조직 형태별로 보면 ‘개인사업자’가 33.2%인 104,046 사업자이고, 법인이 66.7%인 209,048 사업자이었다. ‘법인사업자’ 209,048개를 세분하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이 30.7%인 96,197 사업자이고, 다음으로 ‘기타비법인단체’ 15.1%인 47,304 사업자로 나타났다.

〈표 4-17〉 비활동사업자의 조직형태별 분석

(단위 : 사업자, %)

| 구분 | 사업자 | 구성비 |
|----|--------------|--------|
| | | |
| 계 | 313,094 | 100.0 |
| 개인 | 104,046 | 33.2 |
| 법인 | 209,048 | 66.7 |
| | 단독사업자 | 1,091 |
| | 공장/지사(점)/영업소 | 9,668 |
| | 본사/본부/본점 | 15,604 |
| | 비영리법인의본점및지점 | 96,197 |
| | 법인이아닌종교단체 | 30,056 |
| | 기타비법인단체 | 47,304 |
| | 국가,지방자치단체 | 9,128 |

비활동 313,094 사업자를 산업분류별로 ‘미입력 또는 오류’가 34.9%인 109,241 사업자 이고, 정상 입력한 경우 65.1%인 203,853 사업자이었다. 산업분류가 입력된 사업자 203,853개를 세분하면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이 18.6%인 58,318 사업자, ‘금융및보험업’이 13.9%인 43,394 사업자, ‘도매및소매업’ 8.3%인 25,869 사업자, ‘부동산업및임대업’ 7.6%인 23,741 사업자로 나타났다(<표 4-18> 참조).

<표 4-18> 비활동사업자의 산업별 분석

(단위 : 사업자, %)

| 구분 | 사업자 | 구성비 |
|-----------------------------|---------|-------|
| | | |
| 계 | 313,094 | 100.0 |
| 미입력 및 오류 | 109,241 | 34.9 |
| 입력 | 203,853 | 65.1 |
| 농업,임업및어업 | 3,694 | 1.2 |
| 광업 | 59 | 0.0 |
| 제조업 | 3,764 | 1.2 |
|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 148 | 0.0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 156 | 0.0 |
| 건설업 | 3,347 | 1.1 |
| 도매및소매업 | 25,869 | 8.3 |
| 운수업 | 3,040 | 1.0 |
| 숙박및음식점업 | 9,521 | 3.0 |
|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3,461 | 1.1 |
| 금융및보험업 | 43,394 | 13.9 |
| 부동산업및임대업 | 23,741 | 7.6 |
|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 2,433 | 0.8 |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 1,631 | 0.5 |
|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 2,528 | 0.8 |
| 교육서비스업 | 10,134 | 3.2 |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4,074 | 1.3 |
|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4,536 | 1.4 |
|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 58,318 | 18.6 |
| 가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 생산활동 | 5 | 0.0 |



2. 사회보험명부

사회보험명부에서도 국세자료와 동일하게 사업자의 중복과 2009년 말 이전에 사업을 그만둔 경우가 나타났다. 우선 국민연금사업장에 대하여 중복 및 12월 이전 보험 탈퇴한 경우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사업자는 1,073,311개로 이 중 91,436개가 중복 사업자 및 12월 31일 전 탈퇴한 93,450개 사업자 등으로 인해 262,192 사업자가 줄어 811,119 사업자가였다(<표 4-19>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험 사업장은 1,710,116개로 중복 사업자 220,517개와 12월 31일 전 탈퇴한 298,470개 사업자가 있어 연말 기준으로 521,148 사업자가 줄어 1,188,968 사업자로 나타났다(<표 4-19> 참조).

<표 4-19> 사회보험명부의 통계처리

(단위 : 사업자, %)

| | 국민연금 | | 산업재해보험 | |
|-----------|-----------|-------|-----------|-------|
| | | 구성비 | | 구성비 |
| 통계처리 전 | 1,073,311 | 100.0 | 1,710,116 | 100.0 |
| 통계처리 후 | 811,119 | 75.6 | 1,188,968 | 69.5 |
| 감소 | 262,192 | 24.4 | 521,148 | 30.5 |
| 중복 | 91,436 | 8.5 | 220,517 | 12.9 |
| 12월 이전 탈퇴 | 93,450 | 8.7 | 298,470 | 17.5 |

제4절 행정자료 통합

1. 행정자료 현황 및 통합 모형

앞에서 살펴 본 각 행정자료를 ‘과세대상여부’, ‘과세의 종류’ 및 ‘종사자유무’를 교차하여 보면, 사회보험에서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과세제외 사업을 유일하게 파악할 수 있고, 종사자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명부』 등 국세자료 이외 파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세자료 내에서도 면세사업 여부 등에 따라 포함하고 있는 과세자료가 다름을 알 수 있다(<표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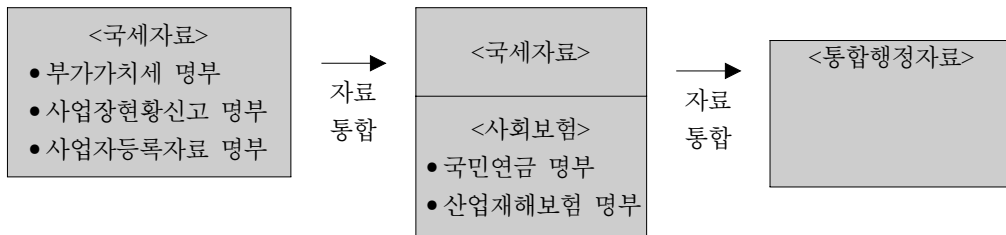
〈표 4-20〉 과세의 종류에 따른 행정자료

| 과세대상 | 과세의 종류 | 행정자료 | |
|------|--------|-----------|---------------|
| 과세제외 | | | 사회보험 |
| 과세대상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명부 | 사업장현황신고, 사회보험 |
| | 간이과세 | 부가가치세명부 | 부가가치세명부, 사회보험 |
|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명부 | 부가가치세명부, 사회보험 |

그러므로 각 명부를 통합하여 볼 때 사업자의 현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행정자료를 활용한 전국사업자통계 생산을 위하여 국세자료 및 사회보험 자료를 통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통합방법의 순서는 우선 사업자의 부가가치 활동에 따른 거래에 과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명부, 사업장현황신고명부, 사업자등록자료명부를 통합하고, 원칙적으로 종사자가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여 사업체의 현황 파악에 제한이 있지만 과세자료에서 파악할 수 없는 과세 제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 명부를 통합하여 통합행정자료를 생성하고자 한다(〈표 4-21〉).

〈표 4-21〉 전국사업체 모집단 생성모형



2. 국세명부의 통합

가. 부가가치세명부와 사업장현황신고의 차이

부가가치세명부와 사업장현황신고의 가장 큰 차이는 면세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하였느냐이다. 즉 부가가치세명부에는 일반 및 간이과세사업자인 반면,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이다.

면세 적용대상은 주로 부가가치세의 조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국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으로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한 면세항목은 아래의 <표 4-22>과 같다(부법 12조, 부령 28~46조).



<표 4-22> 주요 면세 항목

| 구분 | | 면세적용대상 |
|-----------------|---|--|
| 재화 용역의 공급 | 기초생활필수품 | 미가공 농축수입산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
| |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여객운송용역 교육용역(주무관청의 인가·허가 있는 경우에 한함)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
| | 문화관련재화·용역 |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방송 및 통신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동식물원 입장 예술창작 및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 |
| | 금융보험용역 | 금융보험업 및 금융보험업자 이외의 사업자의 대출이자 등 |
| | 인적용역 | 학술연구용역 신용조사업 등 개인 법인의 용역 저술배우, 직업운동가, 보험모집, 강연 등 개인용역(물 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사업하는 경우에 한함) 기술연구용역 |
| | 공익관련재화·용역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급(부동산임대, 도소매, 음식숙 박업, 운동시설운영업, 고속철도여객운송용역 등 제외)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 대한 무상공급 |
| | 기타 재화·용역 | 토지, 소액담배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 |
| 재화의 수입 | 국내공급과의 균형 기타 미가공식품, 도서, 신문, 잡지, 소액담배 공익용도기증, 수출 후 재수입, 수입 후 재수출 등 | |

나. 국세자료명부 작성 및 분석

1) 국세자료통합

부가가치세 부과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에 대하여 2009년 12월 말 이전 자료를 제거하고, 또는 중복 사업자를 제외한 부가가치세명부 4,822,316 사업자와 사업장현황신고명부 559,195 사업자를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여 통합하면, 부가가치세와 사업장현황신고가 중복된 524개 사업자가 발생하여 순사업자는 5,380,987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와 사업장현황신고의 사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국세자료에서 생성된 5,380,987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89.6%인 4,821,792 사업자인데,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생성된 자료는 10.4%인 559,195 사업자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표 4-22>).

〈표 4-23〉 국세자료 자료원별 사업자 분포

(단위 : 사업자, %)

| | 부가가치세 | | 사업장현황신고 | | 계 | |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부가가치세 | 4,821,792 | (89.6) | 524 | (0.0) | 4,822,316 | (89.6) |
| 사업장현황신고 | 524 | (0.0) | 558,671 | (10.4) | 559,195 | (10.4) |
| 계 | 4,822,316 | (89.6) | 559,195 | (10.4) | 5,380,987 | (100.0) |

2) 산업분류별 사업자 비교

산업대분류로 국세자료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23.7%)’, ‘운수업(9.3%)’, ‘숙박 및 음식점업(11.8%)’, ‘부동산업 및 임대업(22.3%)’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가가치세와 사업장현황신고로 나누어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23.7%)’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장현황신고 모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3%, 27.3%로 높게 나타난 반면, ‘운수업(9.3%)’, ‘숙박 및 음식점업(11.8%)’, ‘부동산업 및 임대업(22.3%)’은 부가가치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장현황신고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4-24〉 참조).

〈표 4-24〉 산업대분류 사업자 분포

(단위 : 사업자, %)

| | 계 | | 부가가치세 | | 사업장현황 신고 | | 연계 | |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계 | 5,380,987 | (100.0) | 4,821,792 | (100.0) | 558,671 | (100.0) | 524 | (100.0) |
| 제조업 | 434,307 | (8.1) | 425,342 | (8.8) | 8,956 | (1.6) | 9 | (1.7) |
| 건설업 | 329,969 | (6.1) | 319,981 | (6.6) | 9,985 | (1.8) | 3 | (0.6) |
| 도매 및 소매업 | 1,276,630 | (23.7) | 1,123,816 | (23.3) | 152,584 | (27.3) | 230 | (43.9) |
| 운수업 | 502,644 | (9.3) | 501,208 | (10.4) | 1,423 | (0.3) | 13 | (2.5) |
| 숙박 및 음식점업 | 636,486 | (11.8) | 633,672 | (13.1) | 2,561 | (0.5) | 253 | (48.3)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199,175 | (22.3) | 1,157,037 | (24.0) | 42,133 | (7.5) | 5 | (1.0)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250,995 | (4.7) | 241,567 | (5.0) | 9,424 | (1.7) | 4 | (0.8) |

또한 국세자료 중 비중이 매우 작은 0.5%이하를 제외한 부가가치세와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의 경우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농업,임업및어업’, ‘금융및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산업’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4-25〉 참조).



〈표 4-25〉 산업대분류 사업자 분포

(단위 : 사업자, %)

| | 계 | | 부가가치세 | | 사업장현황신고 | | 연계 | |
|-----------------------|-----------|---------|-----------|---------|---------|---------|-----|---------|
|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 계 | 5,380,987 | (100.0) | 4,821,792 | (100.0) | 558,671 | (100.0) | 524 | (100.0) |
| 농업,임업 및 어업 | 55,753 | (1.0) | 3,235 | (0.1) | 52,518 | (9.4) | - | (0.0)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정보서비스업 | 56,105 | (1.0) | 49,043 | (1.0) | 7,061 | (1.3) | 1 | (0.2) |
| 금융 및 보험업 | 30,767 | (0.6) | 14,505 | (0.3) | 16,262 | (2.9) | - | (0.0) |
|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 106,881 | (2.0) | 103,402 | (2.1) | 3,479 | (0.6) | - | (0.0) |
| 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52,514 | (1.0) | 47,636 | (1.0) | 4,878 | (0.9) | - | (0.0) |
| 교육서비스업 | 126,413 | (2.3) | 18,043 | (0.4) | 108,369 | (19.4) | 1 | (0.2) |
| 보건업및사회복지 서비스업 | 62,259 | (1.2) | 3,292 | (0.1) | 58,966 | (10.6) | 1 | (0.2) |
|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 서비스업 | 105,076 | (2.0) | 96,987 | (2.0) | 8,087 | (1.4) | 2 | (0.4) |

이는 사업장현황신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앞에서 살펴 본 부가가치세법에서의 기초생활필수품과 국민후생용역의 ‘미가공 농축수입산물’,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사업’으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임업 및 어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심층분석>

‘농업,임업 및 어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이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자 39.4%로 사업체현황신고의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표 4-26>).

〈표 4-26〉 사업장현황신고의 주요산업 분포

(단위 : 사업자)

| | 사업자 | |
|--------------|---------|-------|
| | | 구성비 |
| 계 | 558,671 | 100.0 |
| 소계 | 219,853 | 39.4 |
| 농업, 임업및어업 | 52,518 | 9.4 |
| 교육서비스업 | 108,369 | 19.4 |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58,966 | 10.6 |

다음으로 ‘농업,임업 및 어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 대하여 소분류 수준에서 각 자료별 국세자료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사업장현황신고가 90.0%인 243,899 사업자 중 219,622 사업자를 설명하고 있다(<표 4-27>).

<표 4-27> 소분류 수준에서의 현황

(단위 : 사업자)

| 산업소분류 | 국세자료 | 부가가치세 | 사업장현황신고 |
|--------------------|---------|--------|---------|
| | 243,899 | 24,277 | 219,622 |
| 작물 재배업 | 1,203 | 697 | 506 |
| 축산업 | 17,568 | 620 | 16,948 |
|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2 | 1 | 1 |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 1,066 | 375 | 691 |
|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 9 | 4 | 5 |
| 임업 | 2,147 | 1,023 | 1,124 |
| 어로 어업 | 26,940 | 117 | 26,823 |
|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 6,578 | 200 | 6,378 |
| 초등 교육기관 | 463 | 354 | 109 |
| 중등 교육기관 | 1,518 | 1,516 | 2 |
| 고등 교육기관 | 283 | 282 | 1 |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12 | 8 | 4 |
| 일반 교습 학원 | 57,675 | 2,128 | 55,547 |
| 기타 교육기관 | 63,283 | 10,986 | 52,297 |
| 교육지원 서비스업 | 2,939 | 2,684 | 255 |
| 병원 | 1,943 | 592 | 1,351 |
| 의원 | 52,396 | 640 | 51,756 |
| 공중 보건 의료업 | 10 | 8 | 2 |
| 기타 보건업 | 3,072 | 1,057 | 2,015 |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1,400 | 221 | 1,179 |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3,392 | 764 | 2,628 |

또한 위 산업에 대하여 산업세세분류를 대분류 이하에서 오분류 된 229 사업자를 제외하고, 219,624 사업자에 대하여 산업세세분류별 살펴보면 일반의원 25,985 사업자를 등을 포함한 아래의 13개 업종이 190,432 사업자로 전체 사업장현황신고 558,671 사업자의 34%를 설명하고 있다(<표 4-28> 참조).



〈표 4-28〉 산업세세분류 분포

| 산업세세분류 | 사업자 |
|------------------|---------|
| 계 | 219,853 |
| 오분류 | 229 |
| 정분류 | 219,624 |
| 소계 | 190,432 |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5 |
| 양돈업 | 4,496 |
| 육우 사육업 | 5,901 |
| 연근해 어업 | 25,853 |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3,582 |
| 스포츠 교육기관 | 10,380 |
| 예술 학원 | 32,303 |
| 외국어학원 | 15,553 |
| 일반 교과 학원 | 38,720 |
| 일반 의원 | 25,985 |
| 치과 의원 | 14,008 |
| 한의원 | 11,336 |
| 그외기타 비거주복지서비스업 | 2,315 |

3. 사회보험명부의 통합

기준시점 및 중복사업장을 제외한 국민연금(811,119 사업자)과 산업재해보험(1,188,968 사업자)을 통합하면, 중복 없이 산업재해보험에만 있는 425,489 사업자와 국민연금에만 있는 47,649 사업자이었고, 국민연금과 산업재해보험의 중복이 있는 763,479 개 사업자가 발생하여 순사업자는 1,236,60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1,236,608 사업자 중 90.6%인 1,120,196 사업자가 있었고, 9.4%인 116,412 사업자가 산업분류 내 없는 번호를 입력하거나 산업분류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재보험에 만 가입한 경우가 34.4%로 국민연금의 3.9%보다 30.5%p 많은 61,847 사업자로 나타나 산업분류 없음으로 분류한 116,412 사업자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4-28〉).

〈표 4-29〉 사회보험 자료별의 분포

| 구분 | 계 | | 산재보험 | | | 국민연금 | | | 공통 | |
|------------------------|-----------|--------------|---------|-------------|--------|-----------|---------|-------------|----|--|
|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 |
| 계 | 1,236,608 | 100.0 | 425,489 | 34.4 | 47,640 | 3.9 | 763,479 | 61.7 | | |
| 산업분류 없음 ²⁵⁾ | 116,412 | 9.4 100.0 | 61,847 | 5.0 53.1 | 8,529 | 0.7 7.3 | 46,036 | 3.7 39.5 | | |
| 산업분류 있음 | 1,120,196 | 90.6 100.0 | 363,642 | 29.4 32.5 | 39,111 | 3.2 3.5 | 717,443 | 58.0 64.0 | | |

사회보험의 사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사업자 수가 많은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이었으며,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산업재해보험 가입사업자가 국민연금보다 각각 11.9%p, 12.3%p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는 반대로 국민연금 가입사업자가 11.8%p 높게 나타났다(<표 4-30>).

4. 통합행정자료의 생성

<표 4-30> 사회보험명부의 산업별 분포

| 구분 | 계 | | 산재보험 | | 국민연금 | | 연계 | |
|-------------|-----------|-------|---------|-------|--------|-------|---------|-------|
|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
| 계 | 1,236,608 | 100.0 | 425,489 | 100.0 | 47,640 | 100.0 | 763,479 | 100.0 |
| 제조업 | 208,424 | 16.9 | 45,133 | 10.6 | 4,891 | 10.3 | 158,400 | 20.7 |
| 건설업 | 89,514 | 7.2 | 67,994 | 16.0 | 1,952 | 4.1 | 19,568 | 2.6 |
| 도매 및 소매업 | 280,554 | 22.7 | 78,398 | 18.4 | 14,421 | 30.3 | 187,735 | 24.6 |
| 숙박및음식점업 | 111,370 | 9.0 | 66,190 | 15.6 | 1,534 | 3.2 | 43,646 | 5.7 |
| 부동산, 임대업 | 59,889 | 4.8 | 22,841 | 5.4 | 4,061 | 8.5 | 32,987 | 4.3 |
|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 93,222 | 7.5 | 6,218 | 1.5 | 597 | 1.3 | 86,407 | 11.3 |
| 기타 | 393,635 | 31.8 | 138,715 | 32.6 | 20,184 | 42.4 | 234,736 | 30.7 |

부가가치세 명부와 사업장현황신고명부 및 사업자등록번호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한 국세자료명부(5,380,987 사업자)와 국민연금사업장명부와 산업재해보험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한 사회보험(1,236,608 사업자)명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여 통합하면, 총 5,562,203 사업자를 포함한 통합행정등부가 생성된다. 여기에는 국세자료명부와 사회보험명부에서 각각 존재하는 연계사업자가 1,055,392이었고, 또한 국세자료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4,325,595 사업자로 사회보험에만 존재하는 181,216 사업자보다 874,176 사업자가 많았다(<표 4-30>).

<표 4-31> 통합행정자료의 구성

(단위 : 사업자, %)

| | 계 | | 국세자료 | | 사회보험 | |
|------|-----------|---------|-----------|--------|-----------|--------|
|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 계 | 5,562,204 | (100.0) | 5,380,987 | (96.7) | 1,236,608 | (22.2) |
| 국세자료 | 5,381,065 | (96.7) | 4,325,595 | (77.8) | 1,055,392 | (19.0) |
| 사회보험 | 1,236,627 | (22.2) | 1,055,392 | (19.0) | 181,216 | (3.3) |

25) 산업분류 미입력한 경우 및 산업분류번호 없는 숫자를 입력한 경우 포함함



각 행정자료는 과세, 사회보장행정 등의 결과로 그 목적에 따라 포괄영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산업별 축적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세자료에 비하여 사회보험자료에서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면세에 해당하는 것과 상당히 일치한 결과로 보인다(<표 4-32> 참조).

<표 4-32> 산업 대분류별 사업자

(단위 : 사업자, %)

| 산업중분류 | 계 | | 국세자료 | | 사회보험 | | 연계자료 | |
|-------------------|-----------|-------|-----------|-------|---------|-------|-----------|-------|
|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 계 | 5,562,048 | 100.0 | 4,325,458 | 100.0 | 181,215 | 100.0 | 1,055,375 | 100.0 |
| 농업,임업및어업 | 57,040 | 1.0 | 51,486 | 1.2 | 1,287 | 0.7 | 4,267 | 0.4 |
| 제조업 | 442,395 | 8.0 | 211,268 | 4.9 | 8,088 | 4.5 | 223,039 | 21.1 |
| 건설업 | 333,572 | 6.0 | 235,741 | 5.5 | 3,603 | 2.0 | 94,228 | 8.9 |
| 도매및소매업 | 1,290,686 | 23.2 | 1,008,993 | 23.3 | 14,056 | 7.8 | 267,637 | 25.4 |
| 운수업 | 503,885 | 9.1 | 470,650 | 10.9 | 1,241 | 0.7 | 31,994 | 3.0 |
| 숙박및음식점업 | 637,574 | 11.5 | 526,010 | 12.2 | 1,088 | 0.6 | 110,476 | 10.5 |
|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60,987 | 1.1 | 31,436 | 0.7 | 4,882 | 2.7 | 24,669 | 2.3 |
| 부동산업및임대업 | 1,208,818 | 21.7 | 1,148,212 | 26.5 | 9,643 | 5.3 | 50,963 | 4.8 |
|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 111,634 | 2.0 | 48,145 | 1.1 | 4,753 | 2.6 | 58,736 | 5.6 |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 54,461 | 1.0 | 29,188 | 0.7 | 1,947 | 1.1 | 23,326 | 2.2 |
| 교육서비스업 | 142,195 | 2.6 | 96,932 | 2.2 | 15,782 | 8.7 | 29,481 | 2.8 |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97,320 | 1.7 | 4,061 | 0.1 | 35,061 | 19.3 | 58,198 | 5.5 |
|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106,174 | 1.9 | 94,866 | 2.2 | 1,098 | 0.6 | 10,210 | 1.0 |
|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 258,351 | 4.6 | 211,506 | 4.9 | 7,356 | 4.1 | 39,489 | 3.7 |

‘교육서비스업’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에 따른 결과인지 확인하고자 산업세제분류로 보면, 면세사업인 ‘신체부자유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 ‘정신질환,정신지체및약물중독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 ‘아동및부녀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 ‘보육시설운영업’, ‘유아교육기관’, ‘초등학교’ 등이 많이 나타났으며, 사업별 비중을 보면 ‘신체부자유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280, 93.0%)’, ‘정신질환,정신지체및약물중독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26,492, 98.5%)’, ‘아동및부녀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243, 92.4

%), ‘보육시설운영업(26,492, 98.5%)’, ‘유아교육기관(2,061, 93.9%)’, ‘초등학교(5,511, 94.4%)’ 등의 경우 85%이상이었다(<표 4-33>).

<표 4-33> 교육 및 보건업의 산업세세분류별 분포

(단위 : 사업자, %)

| 산업분류 | 계 | | 국세자료 | | 사회보험 | | 연계자료 | |
|--------------------------|--------|-----|-------|------|--------|------|-------|------|
| | 사업자 | | 사업자 | | 사업자 | | 사업자 | |
|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 초등교육기관 | 8,035 | 100 | 69 | 0.9 | 7,572 | 94.2 | 394 | 4.9 |
| 유아교육기관 | 2,196 | 100 | 69 | 3.1 | 2,061 | 93.9 | 66 | 3.0 |
| 초등학교 | 5,839 | 100 | - | - | 5,511 | 94.4 | 328 | 5.6 |
| 중등교육기관 | 5,266 | 100 | 3 | 0.1 | 3,748 | 71.2 | 1,515 | 28.8 |
| 중학교 | 3,035 | 100 | 1 | 0.0 | 2475 | 81.5 | 559 | 18.4 |
| 일반고등학교 | 1,713 | 100 | 1 | 0.1 | 970 | 56.6 | 742 | 43.3 |
| 상업및정보산업고등학교 | 267 | 100 | - | - | 170 | 63.7 | 97 | 36.3 |
| 공업고등학교 | 171 | 100 | 1 | 0.6 | 80 | 46.8 | 90 | 52.6 |
| 기타기술및직업고등학교 | 80 | 100 | - | - | 53 | 66.3 | 27 | 33.8 |
| 고등교육기관 | 494 | 100 | 22 | 4.5 | 211 | 42.7 | 261 | 52.8 |
| 특수학교,외국인학교및대안학교 | 205 | 100 | 3 | 1.5 | 193 | 94.1 | 9 | 4.4 |
| 병원 | 2,493 | 100 | 50 | 2.0 | 545 | 21.9 | 1,898 | 76.1 |
| 공중보건의료업 | 297 | 100 | 2 | 0.7 | 287 | 96.6 | 8 | 2.7 |
| 거주복지시설운영업 | 3,625 | 100 | 159 | 4.4 | 2,212 | 61.0 | 1,254 | 34.6 |
| 신체부자유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 | 301 | 100 | 1 | 0.3 | 280 | 93.0 | 20 | 6.6 |
| 정신질환,정신지체및약물중독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 | 263 | 100 | 3 | 1.1 | 243 | 92.4 | 17 | 6.5 |
| 아동및부녀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 | 446 | 100 | 4 | 0.9 | 419 | 93.9 | 23 | 5.2 |
| 그외기타거주복지시설운영업 | 79 | 100 | 4 | 5.1 | 70 | 88.6 | 5 | 6.3 |
| 보육시설운영업 | 34,533 | 100 | 1,100 | 3.2 | 31,116 | 90.1 | 2,317 | 6.7 |
| 보육시설운영업 | 26,888 | 100 | 153 | 0.6 | 26,492 | 98.5 | 243 | 0.9 |
| 직업재활원운영업 | 531 | 100 | 26 | 4.9 | 356 | 67.0 | 149 | 28.1 |
| 그외기타비거주복지서비스업 | 7,088 | 100 | 910 | 12.8 | 4267 | 60.2 | 1911 | 27.0 |



제 4절 행정자료의 단위 및 개념의 통계적 처리

1. 一行多社 행정자료의 사업자의 사업체로 분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사업자단위과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및 사회보험제도의 본점위주의 사업자 가입 등으로 인하여 사업체 별로 행정자료가 생성되지 않고, 본점 또는 총괄장소 위주로 작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체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여 지역별 통계 생산에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본점 및 주사업장 위주로 된 사업자 단위를 일하는 사업체단위로 분배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행정자료 활용의 목적을 고려할 때, 행정자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자를 사업체단위로 전환하는 방법을 채택하나, 현재 행정자료에서 이용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분배하는 방법을 이용하고자한다.

사업체명부를 사업체조사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연계하여 보면, 행정자료 1개의 사업자에 대하여 전국사업체조사에서 2개 이상의 사업체로 연계된 경우가 70,544개로 사업자 당 평균 2.7개의 사업체가 존재하여 총 192,903 사업체가 있었다.

자료원별로 나누어보면, 사회보험과 국세자료가 중복된 경우가 사업자 1개 당 사업체가 36.1개로 가장 많아 사업체의 60.1%인 109,103 사업체를 차지하였다(<표 4-34>).

<표 4-34> 자료원별사업체 분포

(단위 : 사업자, 사업체, %)

| 자료원 | 사업자 (구성비) | 사업체 (구성비) | 평균 | 최대 |
|------|----------------|-----------------|------|-----|
| 계 | 70,544 (100.0) | 192,903 (100.0) | 2.7 | 727 |
| 국세자료 | 25,635 (36.3) | 54,571 (28.3) | 2.6 | 54 |
| 사회보험 | 9,322 (13.2) | 29,229 (15.2) | 19.9 | 309 |
| 중복 | 35,587 (36.1) | 109,103 (56.6) | 36.1 | 727 |

사업체를 조직형태별로 나누어보면, 법인이 50.3%인 35,476 사업체로 다수 차지하였고, 법인 중에서 '본사/본부/본점'의 경우가 사업자 당 1개 당 사업체가 3.4개로 가장 많아 사업체의 29.6%인 20,882 사업체를 차지하였다(<표 4-35> 참조).

〈표 4-35〉 조직형태별 사업체 분포

(단위 : 사업자, 사업체, %)

| 조직형태 | 사업자 (구성비) | | 사업체 (구성비) | | 평균 | 최대 |
|--------------|-----------|-------|-----------|-------|-----|-----|
| 계 | 70,544 | 100.0 | 192,903 | 100.0 | 2.7 | 727 |
| 개인 | 35,068 | 49.7 | 72,218 | 37.4 | 2.1 | 16 |
| 법인 | 35,476 | 50.3 | 120,685 | 62.6 | 3.4 | 727 |
| 공장/지사(점)/영업소 | 2,315 | 3.3 | 7,319 | 3.8 | 3.2 | 57 |
| 본사/본부/본점 | 20,882 | 29.6 | 70,930 | 36.8 | 3.4 | 727 |
| 비영리법인의 본점/지점 | 6,223 | 8.8 | 23,701 | 12.3 | 3.8 | 290 |
| 국가, 지방자치단체 | 5,644 | 8.0 | 17,789 | 9.2 | 3.2 | 160 |

제4장



2. 多行一社의 행정자료의 사업체 단위로의 통합

多行一社에는 공동사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있다. 多行一社는 사업장의 주소를 개인의 주소로 두는 등 그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하나 상당수가 일정한 장소에 공통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소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또한 공통된 주소를 둔 경우 업무의 독립성이 강한 공동사업자와 독립성이 약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구분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장소에 공통된 주소를 둔 공동사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하여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多行一社로 같이 연구하기로 한다²⁶⁾.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활동하는 5,562,203 사업자를 비교적 사업자의 주소가 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명부를 활용하고자 2009년 사업자등록명부와 연계한 결과 추출된 5,599,551 사업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자한다.

5,599,551 사업자 중 사업자주소가 같은 경우가 41.2%인 2,306,106 사업자로 상당히 많은 사업체가 동일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06,106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체로 전환하기위해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주소 이외의 법인등록번호, 사업체명, 전화번호 등을 가지고 사업체를 찾아보면, 多行一社 사업체는 57,973 사업체로 사업자는 481,088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 당 8.3개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6> 참조).

26) 앞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분하지 않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공동사업자라 한다.

〈표 4-36〉 동일한 주소로 활동하는 사업체 구분

(단위 : 사업자, %)

| 구분 | 사업자 | | 사업체 | |
|----------|-----------|-------|---------|-------|
| | | 구성비 | | 구성비 |
| 계 | 2,306,106 | 100.0 | 704,477 | 100.0 |
| 주소 | 1,606,012 | 69.6 | 592,875 | 84.2 |
| 주소, 산업분류 | 219,006 | 9.5 | 53,629 | 7.6 |
| 多行一社 | 481,088 | 20.9 | 57,973 | 8.2 |

多行一社으로 분류한 481,088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와 사업체를 구분하여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주소, 전화번호, 사업체명, 산업분류가 모두 동일한 ‘주소, 전화번호, 사업체명, 산업분류’의 형태가 58.5%인 281,458로 나타났다. 반면, 주소와 사업체명이 같은 ‘주소, 전화번호’의 경우 사업체당 사업자가 2.7로 적어서 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나 사업체의 49.9%인 28,947 사업체로 차지하였다(〈표 4-37〉).

〈표 4-37〉 多行一社의 유형

(단위 : 사업자, 사업체, %)

| 구분 | 사업자 | | 사업체 | | 사업체 당 사업자 수 |
|-------------------------------|---------|-------|--------|-------|----------------|
| | | 구성비 | | 구성비 | |
| 공동사업자 | 481,088 | 100.0 | 57,973 | 100.0 | 8.3 |
| 주소, 법인번호 | 2,525 | 0.5 | 965 | 1.7 | 2.6 |
| 주소, 산업분류, 법인번호 | 864 | 0.2 | 286 | 0.5 | 3.0 |
| 주소, 사업체명 | 8,477 | 1.8 | 3,035 | 5.2 | 2.8 |
| 주소, 사업체명, 법인번호 | 119 | 0.0 | 53 | 0.1 | 2.2 |
| 주소, 사업체명, 산업분류 | 59,342 | 12.3 | 5,796 | 10.0 | 10.2 |
| 주소, 사업체명, 산업분류, 법인번호 | 44 | 0.0 | 14 | 0.0 | 3.1 |
| 주소, 전화번호 | 77,846 | 16.2 | 28,947 | 49.9 | 2.7 |
| 주소, 전화번호, 법인번호 | 1,140 | 0.2 | 450 | 0.8 | 2.5 |
| 주소, 전화번호, 산업분류 | 42,774 | 8.9 | 7,801 | 13.5 | 5.5 |
| 주소, 전화번호, 산업분류, 법인번호 | 528 | 0.1 | 170 | 0.3 | 3.1 |
| 주소, 전화번호, 사업체명 | 5,817 | 1.2 | 1,668 | 2.9 | 3.5 |
| 주소, 전화번호, 사업체명, 법인번호 | 100 | 0.0 | 38 | 0.1 | 2.6 |
| 주소, 전화번호, 사업체명, 산업분류 | 281,458 | 58.5 | 8,733 | 15.1 | 32.2 |
| 주소, 전화번호, 사업체명, 산업분류, 법인번호 | 54 | 0.0 | 16 | 0.0 | 3.4 |

多行一社 분류한 481,088 사업자를 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운수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각각 33.5%, 28.3%, 19.0%, 5.6%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업체를 기준으로 볼 경우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운수업’, ‘건설업’이 각각 25.1%, 15.6%, 14.7%, 7.5%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자와 사업체의 순위가 다른 것은 사업체 당 사업자 수가 다른 것에 기인한다. 사업체 당 사업자 수는 ‘건설업’, ‘운수업’, ‘도매 및 소매업’이 각각 31.3, 18.9, 6.3 사업자로 나타났다(<표 4-38> 참조).

<표 4-38> 多行一社의 산업별 분포

(단위 : 사업자, 사업체, %)

| 구분 | 사업자 | | 사업체 | | (증가한)사업체 | | 사업체 당 사업자 수 |
|----------------------------|---------|-------|--------|-------|----------|-------|----------------|
|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
| 계 | 481,088 | 100.0 | 57,973 | 100.0 | 423,115 | 100.0 | 8.3 |
| 없음 | 7,359 | 1.5 | 1,885 | 3.3 | 5,474 | 1.3 | 3.9 |
| 농업, 임업 및 어업 | 2,750 | 0.6 | 1,044 | 1.8 | 1,706 | 0.4 | 2.6 |
| 광업 | 120 | 0.0 | 47 | 0.1 | 73 | 0.0 | 2.6 |
| 제조업 | 11,319 | 2.4 | 3,640 | 6.3 | 7,679 | 1.8 | 3.1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29 | 0.0 | 47 | 0.1 | 82 | 0.0 | 2.7 |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329 | 0.1 | 112 | 0.2 | 217 | 0.1 | 2.9 |
| 건설업 | 136,364 | 28.3 | 4,352 | 7.5 | 132,012 | 31.2 | 31.3 |
| 도매 및 소매업 | 91,392 | 19.0 | 14,542 | 25.1 | 76,850 | 18.2 | 6.3 |
| 운수업 | 161,375 | 33.5 | 8,535 | 14.7 | 152,840 | 36.1 | 18.9 |
| 숙박 및 음식점업 | 16,624 | 3.5 | 6,022 | 10.4 | 10,602 | 2.5 | 2.8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290 | 0.3 | 484 | 0.8 | 806 | 0.2 | 2.7 |
| 금융 및 보험업 | 2,560 | 0.5 | 561 | 1.0 | 1,999 | 0.5 | 4.6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27,147 | 5.6 | 9,026 | 15.6 | 18,121 | 4.3 | 3.0 |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3,261 | 0.7 | 1,136 | 2.0 | 2,125 | 0.5 | 2.9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852 | 0.4 | 536 | 0.9 | 1,316 | 0.3 | 3.5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217 | 0.0 | 47 | 0.1 | 170 | 0.0 | 4.6 |
| 교육서비스업 | 3,391 | 0.7 | 1,325 | 2.3 | 2,066 | 0.5 | 2.6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4,610 | 1.0 | 1,711 | 3.0 | 2,899 | 0.7 | 2.7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3,023 | 0.6 | 822 | 1.4 | 2,201 | 0.5 | 3.7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 | 5,969 | 1.2 | 2,097 | 3.6 | 3,872 | 0.9 | 2.8 |



제5절 전국사업체행정통계의 작성 및 품질

1. 행정자료기반전국사업체통계²⁷⁾ 작성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에서의 통계처리는 자료의 중복 등 에디팅 과정을 포함하나 5절에서의 통계처리는 행정자료의 사업자 개념 차이에서 발생 1사업체 다사업자 또는 1사업자 다사업체에 한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 1사업자 다사업체로 행정자료 1개의 사업자에 대하여 전국사업체조사에서 2개 이상의 사업체로 연계된 경우가 70,544개로 사업자 당 평균 2.7개의 사업체가 존재하여 총 192,903 사업체가 있었다. 그러므로 전국사업체통계의 목적인 지역별의 생산을 위하여 본점 및 주사무소로 등록되어있는 행정자료를 지역 사업체별로 행정자료를 나누게 되면, 122,359 사업체가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사업자가 5,562,204에서 5,684,563개로 증가하게 된다. 둘째, 공동사업자인 1사업체 다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인해 동일한 장소에 근무하며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481,088 사업자를 57,973 사업체로 전환하게 되면, 5,684,563 사업자에서 422,2749 준 5,262,289 사업체로 전환되게 된다.

〈표 4-39〉 통합행정명부의 통계처리 과정

(단위 : 사업자, 사업체, %)

| | 통합행정 자료 | 통계처리 | | | 전국사업 체통계 |
|------------|------------|-------------------|-----------|---------------------|-------------|
| | | A.1사업자 다사업체 | A.처리 후 | B.다사업자 1사업체 | |
| 사업자 또는 사업체 | 5,562,204 | | 5,684,563 | | 5,262,289 |
| 통계처리대상 | | +122,359 (가-나) | | -422,2749 (가-나)* | |
| 가 | | 192,903 | | 481,088 | |
| 나 | | 70,544 | | 57,973 | |

* 자료의 중복 등으로 841개의 차이가 있다.

2. 조직형태별 분석

사업자의 사업체로의 전환된 299,915 사업자에 대하여, 조직형태별로 보면, ‘개인사업자’가 다사업자의 처리에서 37,150 사업자가 늘어난 반면 408,854 사업자가 줄어,

27) 앞으로 본연구에서는 행정자료기반전국사업체통계는 행정통계라 하고, 전국사업체조사는 조사통계라 한다.

371,704 사업자가 사업체로 가장 많이 전환되었다. 반면, ‘본사/본부/본점’은 1사업자 다 사업체가 50,048개 늘어났으나 다사업자 1사업체에 의하여 사업자가 준 것은 7,864 사업자에 불과해 통계처리 후 42,184 사업체가 늘어났다(<표 4-40> 참조).

〈표 4-40〉 조직형태별 통계처리 결과

(단위 ; 사업자, 사업체, %)

| 조직형태명 | 통합행정 자료 (사업자) | 통계처리 | | | 전국 사업체 통계 | 전환 사업체 |
|-------------------|---------------------|-----------------------|-------------|--------------------|-----------------|-----------|
| | | A. 1 사 업 자 다사업체 | A. 처 리 후 | B. 다사업자 1사업체 | | |
| 계 | 5,562,204 | 122,359 | 5,684,563 | -422,274 | 5,262,289 | -299,915 |
| 오류 | 40 | 0 | 40 | 0 | 40 | 0 |
| 개인사업자 | 4,941,396 | 37,150 | 4,978,546 | -408,854 | 4,569,692 | -371,704 |
| (법인)단독사업체 | 2,057 | 163 | 2,220 | -63 | 2,157 | 100 |
| 공장/지사(점)/영업소 | 73,480 | 5,004 | 78,484 | -1,624 | 76,860 | 3,380 |
| 본사/본부/본점 | 420,202 | 50,048 | 470,250 | -7,864 | 462,386 | 42,184 |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 57,489 | 17,478 | 74,967 | -3,192 | 71,775 | 14,286 |
|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1,975 | 84 | 2,059 | -28 | 2,031 | 56 |
| 기타비법인단체 | 47,287 | 287 | 47,574 | -525 | 47,049 | -238 |
| 국가, 지방자치단체 | 18,278 | 12,145 | 30,423 | -123 | 30,300 | 12,022 |

3. 산업별 분석

전국사업체통계를 산업별로 보면, ‘운수업’은 다사업자의 처리에서 7,962 사업자가 늘어난 반면 152,830 사업자가 줄어, 144,868 사업자가 사업체로 가장 많이 전환되었고, ‘건설업’은 다사업자의 처리에서 3,643 사업자가 늘어난 반면 132,003 사업자가 줄어, 128,360 사업자가 사업체로 가장 많이 전환되었다. 또한 ‘도매 및 소매업’은 다사업자의 처리에서 35,992 사업자가 늘어난 반면 76,789 사업자가 줄어, 40,797 사업자가 사업체로 가장 많이 전환되었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은 1사업자 다사업체가 11,984개 늘어났으나 다사업자 1사업체에 의하여 사업자가 준 것은 1,878 사업자에 불과해 통계처리 후 10,106 사업체가 늘어났다(<표 4-41> 참조)

〈표 4-41〉 산업별 통계처리 결과

(단위 ; 사업자, 사업체, %)

| 산업대분류 | 통합행정 자료 (사업자) | 통계처리 | | | 전국 사업체 조사 | 전환 사업체 |
|-----------------------------------|---------------------|-----------------------|-------------|--------------------|-----------------|-----------|
| | | A. 1 사 업 자 다사업체 | A. 처 리 후 | B. 다사업자 1사업체 | | |
| 계 | 5,562,204 | 122,359 | 5,684,563 | -422,274 | 5,262,289 | -299,915 |
| | 288,899 | 0 | 288,899 | -5,431 | 283,468 | -5,431 |
| 농업, 임업 및 어업 | 56,756 | 313 | 57,069 | -1,704 | 55,365 | -1,391 |
| 광업 | 2,618 | 72 | 2,690 | -73 | 2,617 | -1 |
| 제조업 | 394,309 | 9,248 | 403,557 | -7,667 | 395,890 | 1,581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2,765 | 617 | 3,382 | -82 | 3,300 | 535 |
|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7,767 | 586 | 8,353 | -216 | 8,137 | 370 |
| 건설업 | 315,961 | 3,643 | 319,604 | -132,003 | 187,601 | -128,360 |
| 도매 및 소매업 | 1,290,613 | 35,992 | 1,326,605 | -76,789 | 1,249,816 | -40,797 |
| 운수업 | 502,593 | 7,962 | 510,555 | -152,830 | 357,725 | -144,868 |
| 숙박 및 음식점업 | 637,086 | 7,323 | 644,409 | -10,525 | 633,884 | -3,202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 비스업 | 50,190 | 2,304 | 52,494 | -805 | 51,689 | 1,499 |
| 금융 및 보험업 | 34,000 | 11,984 | 45,984 | -1,878 | 44,106 | 10,106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206,984 | 5,648 | 1,212,632 | -18,081 | 1,194,551 | -12,433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09,131 | 3,927 | 113,058 | -2,118 | 110,940 | 1,809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 스업 | 53,225 | 3,458 | 56,683 | -1,309 | 55,374 | 2,149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 정 | 4,673 | 4,170 | 8,843 | -158 | 8,685 | 4,012 |
| 교육 서비스업 | 142,144 | 9,698 | 151,842 | -1,970 | 149,872 | 7,728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97,242 | 3,312 | 100,554 | -2,823 | 97,731 | 489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06,475 | 2,294 | 108,769 | -2,182 | 106,587 | 112 |
|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258,619 | 9,808 | 268,427 | -3,628 | 264,799 | 6,180 |
| 가구내고용활동및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154 | 0 | 154 | -4 | 150 | -4 |

제 6 절 전국사업체행정통계의 품질

조사통계의 행정자료로 대체 할 때 주로 논의 되는 통계의 품질은 모집단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포괄범위, 자료 간 일관성, 수요자의 요구에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가를 나타내는 적시성,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항목의 존재하는가를 나타내는 항목의 완결성 등이 그 평가 기준으로 논의 된다(Wallgren, A. and Wallgren, B., 2007). 여기에서는 포괄범위와 자료 간 일관성에 한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포괄범위

가. 모집단 선택

전국사업체통계에서 포괄범위 비교를 위해서는 사업체의 총 규모를 알아야한다. 그러나 영세소규모업체 및 사업장 없이 활동하는 업체가 많아 사업체조사를 통하여 조사 통계 또는 행정자료를 통하여 그 총규모를 아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그 대안으로 가구조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업체를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로 사업장 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수입을 목적으로 한 모든 활동에 대하여 조사하므로 그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조사된다는 장점이 있다²⁸⁾.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 또는 지역별고용조사는 전국사업체행정통계의 포괄범위를 비교하는데 두 가지 제약점이 존재한다. 첫째, 법인사업체의 경우 사장은 임금근로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법인사업체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농업의 경우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 일반 산업과는 다른 매우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국세와 사회보험 역시 농업을 실질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업과 법인사업체를 제외한 비농업 개인사업체에 한하여 포괄범위의 비교가 가능하다²⁹⁾.

28)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행정자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정자료의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직장가입자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된 결과의 가입자와 1.7%인 189,926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2010, 송호만>.

| 구분 |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가입자 | 구성비 |
|------------------|-----------------|-------|
| 경제활동인구조사(09년 8월) | 11,117,682 | 100.0 |
| 행정자료(09년 12월) | 10,927,756 | 98.3 |
| 차이 | 189,926 | 1.7 |

또한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직장가입자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성별로 비교하여보면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윤연옥, 박영실, 2010>.

29) 앞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또는 지역별 고용조사는 모집단으로 정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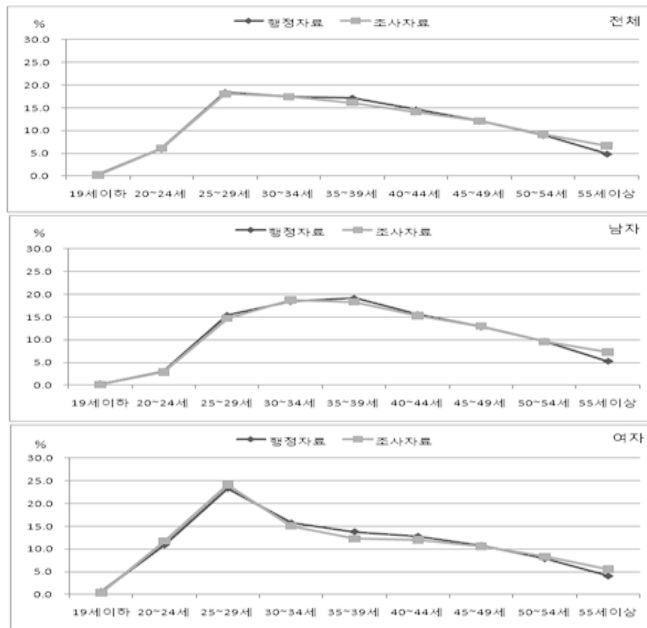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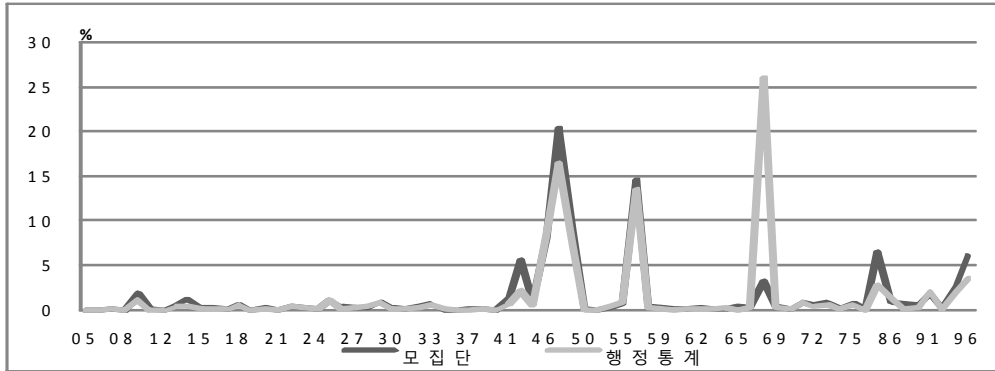
나. 비농업 개인사업체의 포괄범위 비교

비농업개인사업체는 5,571개이나 행정통계에 등록된 사업체는 4,356개로 그 포괄범위는 78.2%로 나타났다.

산업중분류별³⁰⁾로 포괄범위를 보기 전에 먼저 모집단과 행정통계에서 각각의 산업이 차지하는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4-5]와 같다.



- 30) 산업중분류 번호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05 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6 금속 광업,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6 수도사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41 종합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0 수상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1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5 교육 서비스업, 86 보건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5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림 4-5] 산업중분류별 모집단과 행정통계의 분포 비교

이를 구성비의 차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집단이 비농업개인사업체의 70개 산업 중 ‘석탄,원유및천연가스광업’, ‘금속광업’, ‘비금속광물광업;연료용제외’ 등 대부분인 51개 산업은 모집단의 구성비가 0.4%이하로 많았다. 반면 ‘도매및상품중개업’,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숙박업’,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보건업’,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등 7개 산업은 모집단의 구성비가 0.5%이하로 작았다.

특히 ‘식품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종합건설업’, ‘전문직별공사업’, ‘소매업;자동차제외’,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음식점및주점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에서 구성비의 차이가 0.6%이상으로 비교적 차이가 있었다(<표 4-42> 참조).

<표 4-42> 모집단과 행정통계의 구성비 차이

(단위 ; 사업체, %)

| 구분 | 모집단 | 행정통계 | 구성비 |
|-------------------|-------|-------|-------|
| | 100.0 | 100.0 | |
| 식품제조업 | 2.0 | 1.1 | 0.9 |
|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 1.3 | 0.4 | 0.9 |
| 종합건설업 | 1.3 | 0.6 | 0.7 |
| 전문직별공사업 | 5.7 | 2.1 | 3.6 |
| 소매업;자동차제외 | 20.3 | 16.5 | 3.8 |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 8.8 | 7.4 | 1.4 |
| 음식점및주점업 | 14.5 | 13.5 | 1.0 |
| 부동산업 | 3.3 | 26.1 | -22.8 |
| 교육서비스업 | 6.5 | 2.8 | 3.7 |
| 사회복지서비스업 | 0.7 | 0.1 | 0.6 |
| 수리업 | 2.7 | 2.0 | 0.7 |
| 기타개인서비스업 | 6.0 | 3.6 | 2.4 |

다음으로 모집단과 행정통계의 구성비가 상이하게 나타난 ‘식료품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종합건설업’, ‘전문직별공사업’, ‘소매업;자동차제외’,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음식점및주점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11개 주요 산업에 대하여 포괄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4-43> 같이 ‘사회복지서비스업’,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전문직별공사업’, ‘교육서비스업’, ‘종합건설업’ 등은 포괄범위가 40%이하로 나타났고 특히 ‘부동산업’의 경우 무려 623.6%로 나타났다.

<표 4-43> 산업별 포괄범위 비교

(단위 ; 사업체, %)

| 산업분류 | 모집단 | 행정통계 | 포괄범위 |
|--------------------|-------|-------|-------|
| 계 | 5,571 | 4,356 | 78.2 |
| 식료품제조업 | 109 | 47 | 43.1 |
|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 70 | 15 | 21.4 |
| 종합건설업 | 71 | 28 | 39.4 |
| 전문직별공사업 | 316 | 93 | 29.4 |
| 소매업;자동차제외 | 1,130 | 718 | 63.5 |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 492 | 323 | 65.7 |
| 음식점및주점업 | 810 | 589 | 72.7 |
| 부동산업 | 182 | 1,135 | 623.6 |
| 교육서비스업 | 362 | 123 | 34.0 |
| 사회복지서비스업 | 39 | 4 | 10.3 |
| 수리업 | 149 | 86 | 57.7 |
| 기타개인서비스업 | 335 | 155 | 46.3 |

모집단보다 행정통계의 사업체가 많은 원인을 찾고자 부동산업에 대하여 산업세분류로 살펴보면, 기타부동산업이 75.2%인 853,76 사업체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13.2%인 149,354 사업체로 나타났다.

〈표 4-44〉 부동산업의 산업세세분류

(단위 ; 사업체, %)

| | 사업체 | 구성비 |
|--------------|-----------|-------|
| | 1,135,000 | 100.0 |
| 주거용건물임대업 | 43,459 | 3.8 |
| 비주거용건물임대업 | 149,354 | 13.2 |
| 기타부동산임대업 | 853,760 | 75.2 |
|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 807 | 0.1 |
|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 647 | 0.1 |
| 기타부동산개발및공급업 | 2,653 | 0.2 |
| 주거용부동산관리업 | 177 | 0.0 |
| 비주거용부동산관리업 | 2,563 | 0.2 |
| 부동산자문및중개업 | 79,616 | 7.0 |
| 부동산감정평가업 | 303 | 0.0 |

다. 기타부동산임대업 '의 과다 사업체의 발생원인

행정통계는 행정의 집행과정의 부산물로 통계목적과 다르므로 그 차이의 원인은 개념의 차이가 있는지와 행정자료 생성의 기반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었는지 등을 살펴봐야한다.

부동산업에 대하여 통계에서와 주된 행정자료로 활용된 국세자료의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자료의 경우 단순 건물임대 외 청소 등 구체적인 활동이 있어야 하나, 국세자료의 경우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청소 등 구체적인 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사업체로 본다는 특징이 있다(〈표 4-45〉 참조). 그 결과 행정자료 즉 국세자료에서 과다하게 사업체가 발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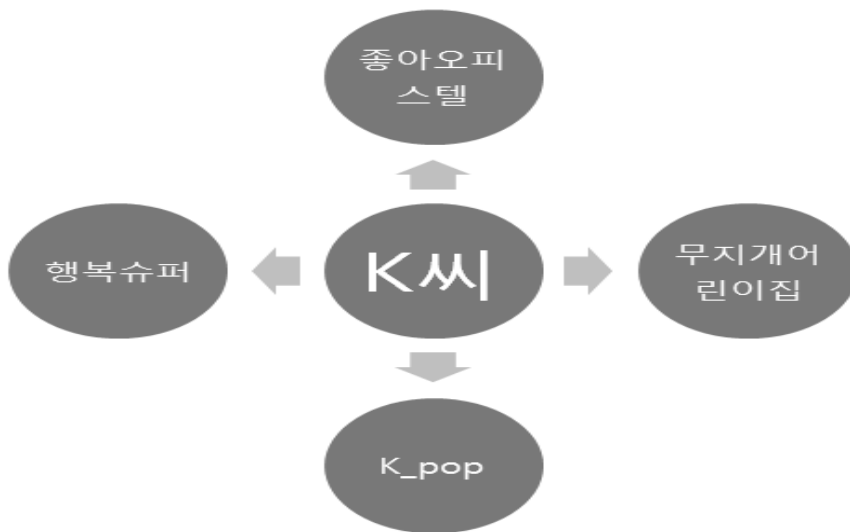
〈표 4-45〉 부동산업의 통계청과 국세청의 기준비교

| | 통계청(경제활동) | 국세청(재화용역의 거래) |
|---------------------------|---|---------------|
| 경제활동 또는 거래에 관한 해석 | 구체적인 활동 | 단순활동 포함 |
| (예)임대차 계약에 따른 금전거래에 대한 해석 | 단순 건물임대 외 청소 등 구체적인 활동이 있어야 함(경제활동인구조사) | 거래로 봄 |

다음으로 부동산업에 대하여 과세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결과의 산물인지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국세청의 사업장으로 본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부법 제4조 제 1항)라고 규정에 예외규정으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³¹⁾.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 4-6]에서 K씨가 ‘좋아오피스텔’, ‘행복슈퍼’, ‘k-pop’, ‘무지개어린이집’에게 임대를 한 경우 일반사업자라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K씨의 임대 의 주사업장 또는 주사무소에 해당하는 곳에서 1개의 사업장이 나오게 되나, 임대업에서 부법 제 4조의 특별규정인 부령 4조에 의하여 4개의 사업장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4-6] 임대업의 사업장

31)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 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 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 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카. 삭제 <2004.12.31>
- 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일관성

가. 개괄

조사통계의 행정자료로의 대체가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전국사업체조사와 행정통계의 자료 간 일관성을 살펴보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행정통계가 전국사업체조사보다 1,968,731 사업체가 많아 일관성이 전체적으로 약하게 보인다.

나. 조직형태별

행정통계와 전국사업체조사의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조직형태별로 자료 간 차이와 구성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료 간 차이를 조직형태별로 보면, 개인사업체가 전국사업체조사에 비하여 2,323,719 사업체가 많음을 알 수 있다³²⁾.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첫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자동판매기, 방문판매 등 무점포소매업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사업체조사에 조사되지 않은 결과이다(최기재·양경진·송호만, 2011). 둘째, 포괄범위 비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자료에서 조세를 부과 할 목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과 형식적인 사업체의 등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차이가 크게 나는 ‘미입력 및 오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국사업체조사의 특징인 무등록사업체가 조사된 반면 행정통계에서는 미등록사업체가 가입하지 않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또한 조사통계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의 오류, 폐업, 사업재개시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2009)³³⁾.

32) 개인사업체가 전체의 1,968,731보다 많은 이유는 통계처리과정에서 다사업자의 처리에서 37,150 사업자가 늘어난 결과이다.

33) 사업자등록번호가 불일치한 사업체 분석에 따르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불일치한 사업체 중에서 대표자가 동일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확인(샘플 200개)한 결과 사업자등록번호 착오기재, 폐업, 사업재개시 순으로 나타났다.

<표> 사업자등록번호 불일치 사업체 확인결과

(개, %)

| 총 계 | ①번호착오 | ②폐업신고 | ③사업재개시 재등록 | ④인수인계 | ⑤기타 |
|---------|--------|--------|------------|-------|-------|
| 200 | 60 | 56 | 55 | 13 | 16 |
| (100.0) | (30.0) | (28.0) | (27.5) | (6.5) | (8.0) |



〈표 4-46〉 조직형태별 행정통계와 전국사업체의 일관성

| 조직형태 | A. 행정통계 | B. 전국사업체조사 | 차이(A-B) | 구성비 ((B/A)*100) |
|---------------|-----------|------------|-----------|--------------------|
| 계 | 5,262,289 | 3,293,558 | 1,968,731 | 62.6 |
| 미입력 및 오류 | 40 | 513,891 | -513,851 | 1284727.5 |
| 개인사업체 | 4,569,692 | 2,245,973 | 2,323,719 | 49.1 |
| (법인)단독사업체 | 2,157 | 1,269 | 888 | 58.8 |
| 공장/지사(점)/영업소 | 76,860 | 52,669 | 24,191 | 68.5 |
| 본사/본부/본점 | 462,386 | 293,874 | 168,512 | 63.6 |
| 비영리법인의본점 및 지점 | 71,775 | 93,046 | -21,271 | 129.6 |
| 법인이아닌종교단체 | 2,031 | 16,414 | -14,383 | 808.2 |
| 기타비법인단체 | 47,049 | 40,136 | 6,913 | 85.3 |
| 국가,지방자치단체 | 30,300 | 36,286 | -5,986 | 119.8 |

다. 산업분류별

산업중분류 수준에서 행정통계와 전국사업체조사 5,000 사업체 이상차이가 나고 구성비가 70%보다 작거나 130%보다 큰 사업(오분류를 포함) 14개 산업에 대하여 행정통계와 전국사업체조사의 일관성을 살펴보면, ‘협회 및 단체’에서 행정통계가 전국사업체조사에 비하여 71,196 사업체가 적었고, 그 외에서는 행정통계의 사업체가 많았다. 행정통계가 많은 사업 중 ‘오분류’는 행정자료의 입력과정에서 입력오류에 따른 것이고, 농업과 어업의 경우는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한 것 따른 것이고, 특히 행정통계가 1,065,986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부동산업은 부동산업에 대한 사업장 예외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표 4-48> 참조).

〈표 4-47〉 14개 주요 산업 산업중분류별 행정통계와 전국사업체조사의 비교

| 조직형태 | 행정통계 | B. 전국사업체조사 | 차이(A-B) |
|----------------------------|-----------|------------|-----------|
| 계 | 5,262,289 | 3,293,558 | 1,968,731 |
| 산업분류오류 | 283,468 | | 283,468 |
| 농업 | 20,872 | 1,674 | 19,198 |
| 어업 | 32,303 | 321 | 31,982 |
|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 47,966 | 31,007 | 16,959 |
| 기타제품제조업 | 26,493 | 16,389 | 10,104 |
| 종합건설업 | 49,677 | 18,030 | 31,647 |
| 전문직별공사업 | 137,924 | 76,686 | 61,238 |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65,986 | 226,228 | 239,758 |
| 출판업 | 21,868 | 10,455 | 11,413 |
| 부동산업 | 1,178,639 | 112,653 | 1,065,986 |
| 전문서비스업 | 51,366 | 31,364 | 20,002 |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27,490 | 16,850 | 10,640 |
| 사업지원서비스업 | 44,390 | 28,095 | 16,295 |
| 협회및단체 | 17,021 | 88,217 | -71,196 |

다음으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대하여 산업세세분류별로 차이가 큰 ‘상품종합중개업’ 등 10개 산업세세분류별로 보면, 일정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무실을 공유하는 ‘수산물 도매업’, ‘과실 및 채소 도매업’ 등이 있고 또한 ‘화장품 도매업’ 등과 같이 일정한 사업체의 근로활동에 제약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종사하는 업종으로 형식적인 사업체를 과다하게 계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4-49〉참조).

〈표 4-48〉 상품중개업의 산업세세분류별 행정통계와 전국사업체조사의 비교

| | 행정통계 | 전국사업체조사 | 차이 |
|-----------------------|--------|---------|--------|
| 상품종합 중개업 | 32,670 | 2,511 | 30,159 |
| 기타 상품 중개업 | 21,677 | 959 | 20,718 |
| 과실 및 채소 도매업 | 18,891 | 12,769 | 6,122 |
| 수산물 도매업 | 19,136 | 9,481 | 9,655 |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21,107 | 8,577 | 12,530 |
| 비알콜음료 도매업 | 9,122 | 2,788 | 6,334 |
| 화장품 도매업 | 9,020 | 2,837 | 6,183 |
|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 17,539 | 9,207 | 8,332 |
| 그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 12,470 | 5,846 | 6,624 |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20,852 | 12,703 | 8,149 |



제7절 결 론

전국사업체조사의 행정자료로 대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계단위에 대한 검토와 포괄범위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

전국사업체조사를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자료와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기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대체 생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정자료를 활용한 전국사업체조사 대체가 가능하게 된다. 전국사업체조사의 주된 기능인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소지역단위의 지역통계 작성과 도·소매업동계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의 사업체조사의 모집단의 역할 고려할 때 사업체 단위 통계가 생산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사업자의 사업체로 분할(一行多社)와 행정자료의 사업체 단위로의 통합(多行一社)이 있다.

먼저 행정자료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가 폭 넓게 인정되고 있어 본점·주사업장의 사업자 단위로 소득 및 매출 신고하거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실질적인 부가가치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체단위의 자료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점 및 주사업장과 연결된 지점 또는 부사업장을 알아야 하나, 부사업장 자료를 행정자료에서 찾을 수 없어 조사 자료인 전국사업체조사와 통합행정자료를 결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 결과 지점 또는 부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70,544개가 있었고, 이러한 사업자를 사업체로 전환한 결과 사업자 당 평균 2.7개의 사업체가 존재하여 총 사업체는 192,903개가 되었다.

또한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사업체는 산업 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동질성, 의사결정의 자율성, 자료수집 가능성이 있는 생산단위가 설정되어야 하나, 행정자료의 경우 조세 부과와 편리성과 근로유연성 확보 등의 목적으로 장소의 동질성, 의사결정의 자율성, 자료수집 가능성 등이 결여된, 공동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등에게 각 개인별 사업자등록 내주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료의 사업자를 사업체 단위로의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공동사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의 주소를 개인의 주소로 두는 등 그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일정한 장소에 공통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소를 유지하는 경우인 공동사업자와 공동사무소에 주소를 둔 독립성이 약한 특수형태근로조사자를 구분하기도 어려워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보면,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동사업자와 독립성이 약한 특수형태근로조사자는 481,088명으로 사업체 단위로 통합 결과 57,973 사업체가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은 주소와 이외의 법인번호, 전화번호 등이 같은 경우 등 논리적으로 명확한 자료에 한하여 사업자를 사업체로 통합하는 통계처리 하였을 뿐, 레코드별로 점검하는 eye-check와 각 사업자에게 전화번호 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이 생략되었다.

다음으로 행정자료의 포괄범위분석을 위해 행정자료의 포괄범위를 과다하게 보일 수 있는 기준시점 이전 자료 및 중복자료에 대하여 각 각 기준시점 처리, 중복자료 제거와 행정자료의 과소를 극복하기 위해선 부가가치세 외 국세자료 및 사회보험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연계키를 활용하여 통합하였고,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모집단과 포괄범위를 비교해 보았다. 첫째, 각 행정자료는 기준시점인 2009년 12월 31일 이전 자료가 있었고, 또한 동일한 ID당 자료가 여러 개 존재하는 중복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명부의 경우 12월 31일 이전 폐업 또는 휴업한 694,506 사업자가 있었고, 또한 6,544,856개의 중복 자료가 존재하였다. 둘째, 각 행정자료는 과세, 사회보장 행정 등의 결과로 그 목적에 따라 포괄영역이 다를 수 있는지를 산업별 축적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세자료에 비하여 사회보험자료에서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료의 통합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알 수 있 수 있고, 또한 수입을 목적으로 한 모든 활동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규모가 영세한 사업체를 포함한다는 장점을 가진 경제활동인구조사(또는 지역별고용조사)에 기반을 둔 모집단과 사업체행정통계 비교해 본 결과 ‘부동산 임대업’이 특히 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원인에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부동산업에 대한 통계청과 국세청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세청의 경우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과세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특별 규정을 두었고, 이는 부가가치세자료에서 사업자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즉 부가가치세의 효율적인 부과를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장이 아닌 임대 건물 단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과하였다. 그러므로 행정자료로 전국사업체조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본점 또는 주사업장 등으로 전환하여야 하나 전환에 필요한 개인소득세 등의 기초자료가 없어 이론적인 검토에 그쳤다.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사업체조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전국사업체조사의 목적에 적합한 통계단위로의 전환에 관한 사업체분할 및 사업자의 통합에 적합한 자료를 찾는 현장사례 연구 등의 심화 연구가 필요하고, 행정자료의 통계자료로 전환을 위한 개인소득 등의 보조 자료가 우선적으로 입수되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보았듯이 모집단과 비교한 결과 특이한 산업 등에 관하여 그 원인을 법률 및 개념 검토하여 그 원인 찾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광윤, 2001, 「세법원론1」, 전영사
- 송호만, 최은영, 2010, “농업총조사의 행정자료 활용 방안”.
- 이준규, 2007, 「세법개론」, (주)영화조세통합
- 송호만·최은영, 2010, “농업총조사의 행정자료 활용 방안”, 통계개발원.
- 조순기·최은영, 2009,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해외 사례 연구”, 통계개발원.
- 최기재·양경진·송호만, “2011,국세자료 기반 신규통계 생산방안 연구”
- 통계청, 2010, 「2009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지침서.」
- 통계청, 2009, 「한국표준산업분류(2008).」
- 통계청, 2009,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지침서.」
- 국세청, <http://www.nts.go.kr>
- 국민연금관리공단, 2011,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main.jsp>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ei.go.kr/index.jsp>
- Statistical Data and Metadata Exchange(SDMX), 2009, <http://www.sdmx.org>.
- Wallgren, A. and Wallgren, B., 2007, Register-Based Statistics: Administrative Data for Statistics Purpose, Willey.
- Statistics Finland(Tiastokeskus Statistikcentralen), 2004, Use of Registers and Administrative Data Sources for Statistical Purpose.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007, Register-based Statistics in the Nordic Countries: Review of Best Practice with Focus on Population and Social Statistics.

<부 록>

<참고 1 관련 법령>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삭제 <2009.4.1>

2. 삭제 <2009.4.1>

3. 삭제 <2009.4.1>

4. 삭제 <2009.4.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통계법 시행령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1.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2. 행정자료의 명칭
3. 행정자료의 사용 목적
4. 행정자료의 내용과 범위
5.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6. 행정자료의 제공방법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청 받은 행정자료의 가공 및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통계법 시행령 제39조(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되거나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개인이나 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연구 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개인이나 기업의 중대한 영업상의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성적 성향이나 생활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징수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

[제81조의10에서 이동 <2010.1.1>]

